

싱가포르 국제조정센터 사건으로 본 한국 변호사 윤리 규정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김도경

(주)트리노스 대표, 국제조정협회 인증 국제조정인, 변호사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Korean Lawyer Ethics Regulations
- Lessons from a Singapore International Mediation Centre Case

Do-Kyung Kim

Trinos, Attorney at law, IMI certified mediator

초록 : 본 연구는 2022년 싱가포르 국제조정센터(SIMC)에서 발생한 실제 사건을 통해 변호사 윤리 규정의 구조적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대형 로펌 소속 변호사가 조정인으로 선임된 국제조정 과정에서 발생한 일련의 윤리 위반 사례는 현행 변호사 윤리 규정의 심각한 한계를 노출시켰다.

SIMC사건의 핵심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조정인이 이해상충 확인을 위해 약 천 명 이상의 로펌 전문가들에게 당사자 정보를 무분별하게 공개한 비밀유지의무 위반, 둘째, 로펌 소속 변호사가 조정당사자에게 직접 연락한 당사자 접촉 금지 위반, 셋째, 외부로부터 입수한 잘못된 정보를 마치 사실인 양 유포한 명예훼손 행위이다. 이러한 복합적 윤리 위반에도 불구하고 서울지방변호사회와 대한변호사협회는 적절한 심리 절차 없이 사건을 무혐의 종결 처리하여 현행 징계 제도의 무력함을 드러냈다.

본 연구는 비교법적 연구방법론을 채택하여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선진적 변호사 윤리 규정과 한국 제도를 비교 분석하였다. 캘리포니아 Rules of Professional Conduct의 Rule 1.6(비밀정보 보호), Rule 2.4(제3자 중립인 의무), Rule 4.2(대리인 있는 당사자와의 연락 금지) 등 구체적 규정과 한국의 추상적 규정을 대조하여 제도적 격차를 규명하였다. 특히 캘리포니아의 정보차단벽(information barrier) 제도, ethical screening 요건, 신속한 징계 절차 등은 한국이 벤치마킹해야 할 모범사례로 분석되었다.

연구 결과, 한국 변호사 윤리 규정의 주요 개선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첫째, 변호사법 제26조와 제31조 개정을 통한 국제조정 특수성 반영 및 정보차단벽 제도의 법적 근거 마련, 둘째, 변호사윤리장전에 국제분쟁해결 윤리 특별 규정 신설 및 대형로펌 정보관리 체계 의무화, 셋째, 징계 기준의 구체화와 신속한 징계 절차 도입을 통한 제도적 실효성 강화, 넷째, IBA Guidelines 등 국제적 기준과의 조화를 통한 글로벌 스탠더드 확립이다.

본 연구는 국제조정이라는 특수한 맥락에서 변호사 윤리의 새로운 쟁점을 발굴하고 체계화했다는 이론적 기여와 함께, 즉시 적용 가능한 구체적 개선방안을 제시했다는 실무적 기여를 한다. 특히 대형로펌의 조직적 정보관리 의무와 기술적 해결방안에 대한 상세한 가이드라인은 법률실무에 직접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법률시장의 국제화가 가속화되는 현시점에서, 본 연구가 제시한 개선방안들의 조속한 실현을 통해 한국 변호사들이 국제무대에서 전문성과 윤리성을 모두 갖춘 법률전문가로 인정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

Abstract : This study diagnoses structural problems in attorney ethics regulations and proposes improvement measures through analysis of an actual case that occurred at the Singapore International Mediation Centre (SIMC) in 2022. A series of ethical violations that occurred during an international mediation process, where an attorney from a large law firm was appointed as mediator, exposed serious limitations in current attorney ethics regulations.

The core problems of the SIMC case are as follows: First, violation of confidentiality duty through the mediator's indiscriminate disclosure of party information to over a thousand law firm professionals for conflict checking purposes; second, violation of the no-contact rule when a law firm attorney directly contacted mediation parties; third, defamatory conduct in disseminating false information obtained from external sources as if it were fact. Despite these compound ethical violations, the Seoul Bar Association and Korean Bar Association terminated the case without proper review procedures, revealing the powerlessness of the current disciplinary system.

This study adopts a comparative legal methodology to analyze and compare California's advanced attorney ethics regulations with the Korean system. By contrasting specific provisions of California Rules of Professional Conduct, including Rule 1.6 (confidential information protection), Rule 2.4 (duties as third-party neutral), and Rule 4.2 (prohibition on contact with represented parties), against Korea's abstract regulations, this study identifies institutional gaps. Particularly, California's information barrier system, ethical screening requirements, and expeditious disciplinary procedures are analyzed as best practices for Korea to benchmark.

The research findings propose the following major improvements to Korean attorney ethics regulations: First, establishing legal grounds for information barrier systems and reflecting the particularities of international mediation through amendments to Articles 26 and 31 of the Attorney-at-Law Act; second, establishing special provisions for international dispute resolution ethics in the Attorney Ethics Charter and mandating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s for large law firms; third, strengthening institutional effectiveness through specification of disciplinary standards and introduction of expeditious disciplinary procedures; fourth, establishing global standards through harmonization with international standards such as the IBA Guidelines.

This study makes theoretical contributions by identifying and systematizing new ethical issues in the special context of international mediation, while also providing practical contributions through immediately applicable concrete improvement measures. In particular, detailed guidelines on organizational information management obligations and technical solutions for large law firms can be directly utilized in legal practice.

As the internationalization of the legal market accelerates, it is hoped that through the prompt implementation of the improvement measures proposed in this study, Korean attorneys can be recognized as legal professionals possessing both expertise and ethics on the international stage.

• 논문접수 : 2025. 6. 23.

• 심사 : 2025. 7. 17.

• 게재확정 : 2025. 9. 26.

.....

제1장 서론

1. 문제의 제기: SIMC사건

2022년 싱가포르 국제조정센터(Singapore International Mediation Centre, SIMC)에서 진행된 개인과 기업 간 분쟁 조정 과정에서 발생한 일련의 사건은 한국 변호사 윤리 규정의 심각한 공백을 드러냈다. 한국의 대형 로펌 소속 변호사가 조정인으로 선임되어 진행된 한 사건에서, 조정인은 자신이 소속된 법무법인에서 공식 이해상충 확인을 하면서 약 천 명이상의 전문가들에게 당사자와 사건 정보 일부를 일괄 공개하는 치명적인 실수를 범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이후 전개된 상황이었다. 한 변호사가 개인 당사자의 과거 신상정보를 전체 구성원에게 이야기하며 의문을 표시했고, 다른 파트너 변호사는 본인이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기업 당사자의 직원에게 직접 연락하여 사건을 확인하는 윤리 위반을 저질렀다. 설상가상으로 그 파트너 변호사는 기업 당사자 직원으로부터 입수한 잘못된 정보를 마치 본인이 파악한 사실인양 전체 이메일에 회신하면서 명예훼손적 헛소문이 확산되었고, 이로 인해 조정은 무산되었다. 피해 당사자가 싱가포르 국제조정센터에 민원을 제기했으나 아무런 응답을 받지 못했고, 서울지방변호사회와 대한변호사협회에 진정하였으나 아무런 심리도 상대방 서면 제공도 없이 사건을 무혐의 종결 처리 해버린 사실은 현행 제도의 무력함을 극명하게 보여준다(이하 “SIMC사건”).

이 사건은 단순한 개별 변호사의 일탈이 아니라, 한국 변호사 윤리 규정 체계의 구조적 문제를 드러낸다. 국제화된 법률시장에서 한국 변호사들이 국제조정인으로 활동하는 빈도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현행 규정은 이러한 환경 변화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대형로펌의 정보관리 시스템에 대한 규제 공백, 국제조정에서의 특수한 윤리 기준 미비, 징계 제도의 실효성 부족 등은 시급한 개선이 필요한 영역이다.¹⁾

2. 연구의 목적, 범위와 방법론

본 연구는 SIMC사건을 중심으로 한국 변호사 윤리 규정의 문제점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국제적 수준에 부합하는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제2장에서는 한국 변호사 윤리 규정의 이론적 기초를 검토하고, IBA Guidelines, UNCITRAL Model Law, IMI Code, SIMC Mediation Rules 등 국제분쟁해결 분야의 주요 윤리 기준을 분석한다. 제3장에서는 SIMC사건을 통해 드러난 한국 변호사 윤리 규정의 구조적 문제점을 비밀유지의무, 이익충돌, 당사자 접촉 금지, 징계 제도 측면에서 체계적으로 규명한다. 제4장에서는 미국 캘리포니아주 Rules of Professional Conduct를 비교법적으로 검토하여, 특히 Rule 1.6(비밀 정보 보호), Rule 1.10(정보차단벽), Rule 2.4(제3자 중립인), Rule 4.2(당사자 접촉 금지) 등을 중심으로 한국 규정과의 차이를 분석한다. 제5장에서는 비교법적 분석과 국제 기준을 바탕으로 변호사법 개정안, 변호사윤리장전 개정안, 징계 제도 개선방안, 예방적 제도 구축 방안을 제시한다.

1) 우리나라는 2019년 8월 「조정에 의한 국제적 화해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이하 “싱가포르 협약”)에 서명하였으며, 2025년 9월 법무부 국제법무국 국제법무정책과에서 「싱가포르조정협약 이행법률」 제정안을 마련하였다. 현재 법무부는 대한조정학회, 국제거래법학회 등 학계의 의견을 수렴 중이며, 내년 중 해당 법률안이 공포되고 싱가포르 협약이 비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국제조정 사건의 증가가 본격화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국제조정과 관련된 변호사 윤리규정의 보완도 병행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한국과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변호사 윤리 규정을 중심으로 규범 체계, 실체적 내용, 절차적 집행 메커니즘을 비교 분석한다. 특히 국제조정과 대형로펌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실무적 관점에서의 분석을 병행한다.

제2장 변호사 윤리 규정의 이론적 기초

1. 현행 한국 변호사 윤리 규정의 체계와 구조

1.1 규범 체계의 이원적 구조

한국의 변호사 윤리 규정은 변호사법과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윤리장전을 중심으로 한 이원적 구조로 구성되어 있다. 변호사법은 법률로서 변호사의 기본적인 의무를 규정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법적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한다. 반면 변호사윤리장전은 대한변호사협회가 자율적으로 제정한 규범으로서, 보다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행위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변호사법은 품위유지의무(제24조 제1항), 진실의무(제24조 제2항), 비밀유지의무 등(제26조), 수임제한(제31조) 등 기본적인 윤리 의무를 규정한다. 이러한 법적 의무는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성격을 띠고 있어, 구체적인 상황에서의 적용에는 해석의 여지가 많다. 추상성은 변호사의 재량권을 보장하는 동시에 예측가능성을 저해하는 양면성을 가진다.

변호사윤리장전은 2021년 5월 31일 개정을 통해 7개의 윤리강령과 5장 54개 조항으로 재편되었다. 특히 제4, 5장(제35조 내지 제50조)에서는 여러 가지 이해상충 상황에 관한 상세한 규정을 마련하였다. 이는 법조인구의 증가와 대형로펌의 성장에 따른 이익충돌 문제의 심각성을

반영한 것으로 평가된다.

1.2 비밀유지의무와 이익충돌회피의무의 관계

비밀유지의무는 의뢰인이 변호사에게 안심하고 모든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신뢰의 기초이며, 이익충돌회피의무는 이러한 신뢰가 다른 의뢰인의 이익과 충돌하지 않도록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이다. 즉, 비밀유지의무와 이익충돌회피의무는 동전의 양면과 같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다. SIMC사건은 이 두 의무가 동시에 위반될 때 발생하는 문제의 심각성을 보여준다. 조정인이 이익충돌 확인을 위해 당사자 정보를 로펌 전체에 공개한 행위는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한 것이며, 동시에 적절한 이익충돌 관리 시스템의 공백을 드러낸 것이다.

2. 국제분쟁해결에서의 변호사 조정인 윤리

SIMC사건은 국제조정인의 지위에 대한 규범적 공백을 극명하게 드러냈다. 조정인(mediator)과 중재인(arbitrator)은 분쟁해결에서 수행하는 역할이 본질적으로 다름에도 불구하고, 현행 규정은 이를 명확히 구분하지 못하고 있다.²⁾

중재인은 준사법적 판정자로서 당사자들에게 구속력 있는 결정을 내리는 반면, 조정인은 당사자들의 자발적 합의를 촉진하는 중립적 조력자에 불과하다. 이러한 역할의 차이는 윤리적 의무에도 영향을 미친다. 조정인은 당사자들과 개별 협의(caucus)를 통해 각 당사자의 진정한 이해관계를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창의적 해결방안을 모색한다. 이 과정에서 취득하는 정보의 성격과 비밀유지의 범위는 중재인의 그것과는 질적으로 다르다.

UNCITRAL Model Law on International

2) Schonewille, M.(2024). Toolkit Mediation: For mediators and negotiators. Toolkit Company. p. 62.

Commercial Mediation(2018) 제10조는 조정 절차와 관련된 모든 정보의 비밀유지를 원칙으로 하면서도, 당사자들의 합의에 의한 예외를 인정한다. 또한 제11조는 조정 과정에서 나온 정보의 후속 절차에서의 증거능력을 원칙적으로 배제한다. 반면 한국법은 이러한 조정 특유의 비밀보호 체계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이하 국제중재인과 국제조정인의 윤리에 관한 국제적인 가이드라인이 될 만한 사례들을 검토하고, 한국의 조정인 윤리기준의 발전 방향에 대해 검토해 본다.

2.1 국제중재인의 윤리기준(IBA Guidelines 2024)

International Bar Association (IBA) Guidelines on Conflicts of Interest in International Arbitration (2024년 개정)은 중재인의 독립성과 공정성에 대한 상세한 기준을 제시한다.³⁾ 특히 소송금융(third-party funding), 소셜미디어 관계 등 현대적 이익충돌 상황을 포함하고 있다.

2.1.1 독립성과 공정성의 유지

중재인은 임명 시점부터 절차가 최종 완결되는 시점까지, 외부 영향에 대한 합리적 의심(justifiable doubts)이 발생하지 않도록 독립성과 공정성을 유지해야 한다. 이 기준은 ‘객관적 제3자적 관점(objective reasonable third-person test)’에 따라 평가되며,⁴⁾ 임명 거부나 사임, 또

는 해당 사유의 의무적 공개(disclosure)를 통해 이해충돌을 해소할 수 있다. 단, ‘면책 불가능 적색 상황(non waivable Red List)’에서는 예외 없이 거부 또는 사임이 요구된다.⁵⁾

2.1.2 소송금융(Third-Party Funding)

2024년 개정은 특히 소송금융의 주체인 제3의 자금지원자(third-party funder) 및 보험사(insurer)의 역할을 강조한다. 해당 자금제공자가 당사자에 대한 ‘지배적 영향(controlling influence)’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 이들은 ‘실질적으로 당사자와 동일한 정체성(party identity)’으로 간주된다.⁶⁾ 따라서 중재인은 관련 정보 및 과거 관계를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하며, 경우에 따라 Red List 사유가 될 수 있다.⁷⁾ 해외에는 소송금융시장이 이미 성숙기에 이르렀고, 국내에서도 로앤굿이 2024년 소송금융(변호사비 지원) 서비스를 본격 출시해서 운영 중이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로앤굿은 1년 2개월만에 102건의 소송금융을 실행했다.⁸⁾

2.1.3 소셜미디어 활동

사회관계망을 통한 발언 또한 심각한 이해충돌 위험 요인으로 간주된다. 개정된 IBA 가이드라인은 중재인이 소셜미디어 또는 공개 미디어에서 사건 관련 쟁점에 대해 명시적 견해나 편향된 입장을 표명한 경우, 이는 ‘공정성에 대한 합리적 의심(justifiable doubt)’을 유발할 수 있는 상황으로 설정한다.⁹⁾ 특히 Orange List 3.4.2

3) IBA Guidelines on Conflicts of Interest in International Arbitration (and Mediation)(2024), General Standards 1-2.

4) *Ibid.*, General Standards 1-2.

5) *Ibid.*, General Standards 2(c), 4(b).

6) *Ibid.*, General Standard 6(a).

7) *Ibid.*, Orange List, paras. 2.3.6; Explanation to Standard 6.

8) 안현 기자, 법률신문 기사, 2024. 9. 24.자 “로앤굿, 소송금융 지원 100건 달성”

(2025. 6. 21. 최종방문, <https://www.lawtimes.co.kr/news/201543>)

9) IBA Guidelines on Conflicts of Interest in International Arbitration (and Mediation)(2024), Orange List ¶ 3.4.2.

는 아래를 예시로 들고 있다:¹⁰⁾

- LinkedIn, X(Twitter), Facebook, 블로그, YouTube 게시물 또는 댓글에서 사건 쟁점에 대한 언급
- 전문 저널, 인터뷰, 강연 등 공개 매체에서 해당 입장 옹호
- 심지어 비공식적·비전문적 맥락의 디지털 콘텐츠일지라도, 객관적 제3자가 공정성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면 대상이 된다.

이러한 행위는 단순 공개 견해 표명 수준에 그치지 않고, ‘사건에 대한 선험적 판단(pre judgment)이나 편향 노출’로 해석될 수 있다. 그 결과, 해당 중재인은 사전 의무적 공개(duty to disclose) 대상이 되며, 당사자가 이의를 제기하거나 신뢰 저하를 주장할 경우 임명 거부 또는 사임 사유가 될 수 있다.¹¹⁾

2.2 국제조정인 윤리 기준

조정(mediation)은 중재와 달리 조정인이 당사자들의 자발적 합의를 도출하도록 지원하는 절차로서, 중재인과는 다른 역할과 책임을 가진다. 조정인에게 적용가능한 국제기준은 다음과 같다.

2.2.1 UNCITRAL Model Law on International Commercial Mediation (2018)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가

2018년 채택한 국제상사조정 및 조정결과 국제화해합의서에 관한 모델법은 국제조정에서의 기본 원칙을 제시한다.¹²⁾

(1) 중립성과 독립성 원칙

조정인은 모든 당사자에 대해 중립적이고 독립적인 지위를 유지해야 하며, 특정 당사자에게 유리한 조언이나 판단을 제공해서는 안 된다.¹³⁾

(2) 비밀유지 원칙의 체계적 규정

Article 10 (Confidentiality)에 따르면, “당사자들이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조정 절차와 관련된 모든 정보는 비밀로 유지되어야 하며, 법률에 의해 공개가 요구되거나 합의서 이행 또는 집행을 위한 목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될 수 없다.”¹⁴⁾ 이는 한국의 변호사법 제26조와 유사하지만 다음과 같은 점에서 더욱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기준을 제시한다.

- ① 보호 대상의 명확화: 한국법의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이라는 추상적 표현과 달리, “조정 절차와 관련된 모든 정보(all information relating to the mediation proceedings)”로 보호 범위를 명확히 규정한다.
- ② 당사자 자율성 인정: “당사자들이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Unless otherwise agreed by the parties)”이라는 조건을 명시하여 당사자의 합의에 의한 비밀유지 의무의 변경 가능성을 인정한다.
- ③ 구체적 예외 사유: 법률에 의한 공개 요구나 합의서 이행·집행 목적이라는 두 가지 명확

10) *Ibid*; see also General Standard 3 (duty to disclose)

11) *Ibid*; see also General Standard 2(c)

12) United Nations Commission on International Trade Law, *UNCITRAL Model Law on International Commercial Mediation and International Settlement Agreements Resulting from Mediation(2018)
https://uncitral.un.org/en/texts/mediation/modellaw/commercial_conciliation (2025. 9. 11. 최종방문)

13) *Id.*, art. 7 (Conduct of mediation).

14) *Id.*, art. 10 (Confidentiality): “Unless otherwise agreed by the parties, all information relating to the mediation proceedings shall be kept confidential, except where disclosure is required under the law or for the purposes of implementation or enforcement of a settlement agreement.”

한 예외 사유를 제시한다.

(3) 증거능력 배제를 통한 비밀성 강화

Article 11 (Admissibility of evidence in other proceedings)은 조정의 비밀성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조정 관련 정보의 후속 절차에서의 증거능력을 원칙적으로 배제한다.¹⁵⁾ 구체적으로 다음 정보들은 중재, 소송 또는 이와 유사한 절차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 ① 절차 참여 관련 정보: 조정 참여 초대나 조정 참여 의사 표시, 조정 참여에 대한 당사자의 의지
- ② 실체적 협상 내용: 분쟁 해결을 위한 당사자의 견해나 제안, 조정 과정에서 당사자가 한 진술이나 자백, 조정인이 제시한 제안, 조정인 제안에 대한 당사자의 수락 의사
- ③ 조정 전용 문서: 조정 목적으로만 작성된 문서

이러한 증거능력 배제 규정은 “정보의 형태나 증거의 형태와 관계없이 적용(irrespective of the form of the information or evidence)”되며, 중재재판부, 법원 또는 기타 권한 있는 정부기관은 이러한 정보의 공개를 명령할 수 없고, 만약 이러한 정보가 증거로 제출되더라도 부적법한 증거로 취급되어야 한다.¹⁶⁾

(4) 이해충돌 공개의무

조정인은 임명 전후에 자신의 독립성이나 중립성에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 모든 상황을 당사자들에게 공개해야 한다. 특히 조정인은 “자신의 공정성이나 독립성에 대한 정당한 의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상황(circumstances likely

to give rise to justifiable doubts as to his or her impartiality or independence)”을 즉시 공개해야 한다.¹⁷⁾

(5) 한국 규정과의 차이점

UNCITRAL 모델법의 이러한 체계적 접근과 비교할 때, 한국의 현행 변호사 윤리 규정은 다음과 같은 한계를 보인다.

첫째, 조정 절차의 특수성을 반영한 구체적 비밀유지 기준이 없다. 변호사법 제26조는 일반적인 비밀유지의무만을 규정할 뿐, 조정의 특성을 고려한 세부 기준이 없다. 둘째, 증거능력 배제에 관한 명시적 규정이 없어 조정 과정에서 나온 정보가 후속 소송에서 사용될 위험이 있다. 이는 당사자들의 조정 참여 의지를 저해할 수 있다. 셋째, 당사자 합의에 의한 비밀유지 의무의 조정 가능성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실무상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

2.2.2 International Mediation Institute (IMI) Code of Professional Conduct

세계에서 유일한 범국가적인 조정인 단체 ‘국제조정기구(IMI)’의 직업행위준칙은 조정인의 구체적인 행동 기준을 제시한다.¹⁸⁾

- ① 자기결정 원칙(Self-Determination): 조정인은 당사자들이 스스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하며, 결과에 대한 압력을 가하거나 특정 해결책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¹⁹⁾
- ② 역량 기준(Competence): 조정인은 해당 분쟁을 다룰 수 있는 충분한 지식, 기술, 경험을 보유해야 하며, 역량이 부족한 경우 조정을

15) *Id.*, art. 11 (Admissibility of evidence in other proceedings)

16) *Id.*, art. 11, paras. 2-3.

17) *Id.*, art. 6, para. 5.

18) International Mediation Institute, IMI Code of Professional Conduct,

<https://imimediation.org/about-imi/imi-code-of-professional-conduct/> (2025. 9. 11. 최종 최종방문)

19) *Id.*, Standard 1 (Self-Determination).

거부하거나 적절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²⁰⁾

- ③ 지속적 공개 의무: 조정 과정 중 새로운 이해 충돌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즉시 당사자들에게 공개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²¹⁾

2.2.3 Singapore International Mediation Centre (SIMC) Mediation Rules

싱가포르 국제조정센터의 윤리강령은 아시아 지역 국제조정의 표준을 제시한다.²²⁾

- ① 문화적 민감성: 국제조정에서는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당사자들이 참여하므로, 조정인은 문화적 차이를 이해하고 존중해야 한다.²³⁾
- ② 언어 장벽 고려: 조정인은 모든 당사자가 조정 과정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통역이나 번역 서비스 제공을 고려해야 한다.²⁴⁾
- ③ 사후 관계 금지: 조정 종료 후 일정 기간(통상 2년) 동안 조정인이나 그가 소속된 로펌은 해당 사건의 당사자들을 대리할 수 없다.²⁵⁾
- ④ 정보차단벽 의무: 조정인이 소속된 로펌은 조정 관련 정보가 다른 업무에 사용되지 않도록 효과적인 정보차단벽을 구축해야 한다.²⁶⁾

2.3 미국과 유럽의 조정인 윤리 기준

2.3.1 미국의 조정인 윤리 기준

2005년 제정된 Model Standards of Conduct for Mediators는 미국 중재협회(AAA), 미국 변

호사협회(ABA), 분쟁해결협회(ACR)가 공동 개발한 기준이다. 핵심 원칙은 다음과 같다:

- ① 자기결정권(self-determination) - 당사자의 자발적 의사결정 보장
- ② 공정성(impartiality) - 편견 없는 중립적 태도 유지
- ③ 이해충돌 공개 - 잠재적 이해충돌 상황의 즉시 공개
- ④ 역량(competence) - 조정 수행에 필요한 전문성 유지
- ⑤ 비밀유지(confidentiality) - 조정 과정의 비밀 보호
- ⑥ 절차의 질(quality of process) - 공정한 절차 운영²⁷⁾

2018년 JAMS Mediators Ethics Guidelines는 특히 법률 조언 금지와 정보 공유 의무를 강조한다. 조정인이 변호사 자격을 가진 경우에도 법률 조언을 제공해서는 안 되며, 당사자 간 정보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²⁸⁾

2.3.2 유럽의 조정인 윤리 기준

2004년 European Code of Conduct for Mediators는 EU 차원의 통일된 기준을 제시한다. 미국과 달리 '독립성(independence)'을 별도로 강조하며, 투명성과 당사자 간 직접 대화를 중시한다. 조정인은 ① 독립성과 중립성, ② 조정 합의의 명확화, ③ 절차의 투명성, ④ 당사자

20) *Id.*, Standard 2 (Competence).

21) *Id.*, Standard 4 (Conflicts of Interest).

22) Singapore International Mediation Centre, *SIMC Mediation Rules, <https://simc.com.sg/mediation-rules> (2025. 9. 11. 최종 최종방문)

23) *Id.*, Rule 3.1 (Cultural Sensitivity).

24) *Id.*, Rule 3.2 (Language Considerations).

25) *Id.*, Rule 4.1 (Post-Mediation Restrictions).

26) *Id.*, Rule 4.2 (Information Barriers).

27) Model Standards of Conduct for Mediators(2005), Standards I-VI.

28) JAMS Mediators Ethics Guidelines(2018), Guideline III, V.

의 정보에 입각한 동의(informed consent) 확보 의무를 진다.²⁹⁾

2018년 제정된 European Code of Conduct for Mediation Providers는 조정 서비스 제공기관의 윤리 기준을 규정한다. 기관 차원의 품질 관리, 조정인 선임 절차의 투명성, 이용자 고충 처리 시스템을 요구한다.³⁰⁾

제3장 한국 변호사 윤리 규정의 현황과 문제점

1. 비밀유지의무 규정의 현황과 문제점

1.1 변호사법 제26조의 한계

변호사법 제26조는 “변호사 또는 변호사이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한다. 이는 형법 제317조의 업무상비밀누설죄와 연계되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중요한 의무이다. 그러나 이 조항은 다음과 같은 구조적 한계를 가지고 있다.

첫째, 변호사법상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의 범위가 불명확하다. 변호사윤리장전 제18조 제2항과 제3항에서는 이를 구체화하여 의뢰인이 직무와 관련하여 의뢰인과 의사교환을 한 내용이나 의뢰인으로부터 제출받은 문서 또는 물건, 직무를 수행하면서 작성한 서류, 메모, 기타 유사한 자료를 포함한다.

둘째, 비밀유지의무의 예외 사유가 명시되어 있지 않다. 변호사윤리장전 제18조 제4항에서는 중대한 공익상의 이유가 있거나, 의뢰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 또는 변호사 자신의 권리를 방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이를 공개 또는 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미국의 ABA Model Rule 1.6(b)는 의뢰인의 동의, 법률상 요구, 변호사의 자기방어, 중대한 신체적 위해 방지 등 7가지 예외 사유를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는 반면, 한국은 변호사윤리장전의 규정 이외에 달리 법률의 명문 규정이 없다.

셋째, 로펌 내부에서의 정보 공유에 대한 기준이 없다. SIMC사건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이익충돌 확인을 위한 정보 공유의 범위와 방법에 대한 구체적 지침이 없어, 과도한 정보 노출의 위험이 있다.

SIMC사건에서 조정인은 비서를 통하여 이익충돌 확인을 위해 로펌 내 약 천 명이상의 전문가들에게 사건 정보를 이메일로 발송했다. 이는 변호사법 제26조의 비밀유지의무 위반이 문제될 수 있다. 그러나 현행 규정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추상적 규정만을 두고 있을 뿐, 대형로펌 내부에서의 이해상충여부 확인을 위한 정보 공유 범위와 방법에 대한 구체적 기준을 제시하지 못한다.

변호사법 제26조와 변호사윤리장전 제18조는 변호사가 의뢰인의 비밀이나 의뢰인과의 의사교환 등에 관한 사항을 누설 또는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는 의무를 규정하고 있을 뿐, 동일한 법무법인, 변호사 사무소 내부에서 일어난 비밀유지와 관련해서는 아무런 규정이 없다. 특히 미국의 변호사-의뢰인 특권(Attorney-Client Privilege)과 달리, 한국에서는 증거법적 보호가 미약하여 변호사의 비밀유지의무가 실질적으로 보장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SIMC사건은 이러한 학술적 지적이 현실화된 사례라 할 수 있다.

29) European Code of Conduct for Mediators(2004), Articles 1-4.

30) European Code of Conduct for Mediation Providers(2018), Section 2-3

1.2 변호사-의뢰인 특권의 미비

한국법상 또 다른 문제는 영미법계의 변호사-의뢰인 특권(attorney-client privilege)에 해당하는 명문 규정이 없다는 점이다. 헌법재판소는 2021헌마619 결정에서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신뢰관계는 헌법 제12조 제4항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본질적 내용”이라고 판시하였으나, 이는 형사절차에 한정된 것으로 민사 및 행정절차에서의 보호는 여전히 불명확하다.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서울회의 경우 응답 변호사 188명 중 42명이 권력기관으로부터 변호사의 비밀유지권이 침해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³¹⁾ 이는 국제적 기준에 비추어 볼 때 심각한 수준의 권리 침해로 평가된다.

1.3 대형로펌 정보관리의 문제점

1.3.1 정보차단벽(Information Barrier) 규정의 부재

대형로펌의 성장과 함께 나타난 새로운 유형의 비밀유지 문제는 다음과 같다.³²⁾ 첫째, 대규모 인원으로 인한 정보 통제의 어려움이다. SIMC사건에서 약 천 명에게 정보가 공유된 것은 이러한 구조적 문제의 극단적 사례이다. 둘째, 다양한 업무 분야 간 정보 격리의 필요성이다. 동일 로펌 내에서도 기업인수합병팀과 소송팀 간의 정보 차단이 필요한 경우가 빈번하다. 셋째, 국제업무 증가에 따른 다국적 정보 관리의 복잡성이다.

대형로펌에서 이익충돌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효과적인 정보차단벽 시스템이 필수적이다. 그

러나 한국 변호사 윤리 규정은 이에 대한 명시적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 SIMC사건에서 조정인이 전체 구성원에게 정보를 공개한 것은 정보차단벽의 기본 원칙을 무시한 행위다.

반면 미국 캘리포니아주는 Rule 1.10에서 다음과 같은 스크리닝(screening) 절차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적시성, 수수료 배분 금지, 영향받는 당사자에 대한 통지 등 구체적 요건을 제시한다.³³⁾ 한국도 이러한 구체적 기준의 도입이 시급하다.

스크리닝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선언적 조치로는 부족하며, 정보 접근 차단과 물리적·조직적 격리 절차를 포함한 실질적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요건은 Rule 1.10의 Comment [5]에서 명시적으로 제시되고 있으며, 다음과 같은 핵심 요소를 포함한다:

- ① 사건 관련 문서(종이 및 전자)의 접근 차단
- ② 사건 관련 회의·논의·연락에서의 완전한 배제
- ③ 해당 스크린의 존재를 사무소 전 직원에게 명확히 공지
- ④ 사건과 관련된 자료나 정보가 실수로라도 접근되지 않도록 책임자 지정
- ⑤ 스크린 운영에 관한 내부 기록 유지 및 문서화
- ⑥ 변호사 감독의무(Rule 5.1) 및 직원 관리책임(Rule 5.3)에 따라 효과적으로 실행될 것

이와 같이, 스크리닝 제도는 단순한 형식 요건이 아니라, 사적 정보와 고객의 비밀 유지에 관한 실질적 조치가 수반되어야만 충돌 회피 수단으로서의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

31) 서주연/윤종행/천하람(2020), “변호사와 의뢰인 간 비밀유지권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20-AB-09』, 51면.

32) 김제완(2011), “이익충돌방지를 위한 로펌의 자율통제절차에 관한 연구” 『인권과정의』 제414호, 98~103면.

33) Rule 1.10 Imputation of Conflicts of Interest: General Rule
https://www.calbar.ca.gov/Portals/0/documents/rules/Rule_1.10-Exec_Summary-Redline.pdf

1.3.2 이해상충 체크를 위한 정보공유 범위

정보차단벽 구축의 전제는 로펌 내 이해상충체크 시스템의 작동이다. 과도한 정보 공유는 비밀 유지의무 위반을, 과소한 정보 공유는 이해상충 간과를 초래한다. 캘리포니아 윤리규정은 conflict check 과정에서 수집·공유되는 정보에 대해 “합리적으로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으로 접근을 제한”할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이를 통해 의뢰인 비밀이 전체 로펌 구성원에게 무분별하게 노출되는 것을 예방한다. 공식 의견 및 실무 매뉴얼에서 지속적으로 이 원칙이 강조되고 있다.³⁴⁾

한국의 경우 변호사법 제26조와 제31조가 추상적으로만 규율하여, 실무에서 정보공유 범위에 대한 혼란이 있다. 특히 대형로펌의 경우 의뢰인 정보를 다루면서도 명확한 기준 없이 각 로펌이 자체적으로 판단하고 있어, 과도한 정보 공유로 인한 비밀유지의무 위반 위험과 과소한 정보 공유로 인한 이해상충 간과 위험이 공존한다.

2. 이익충돌 규정

2.1 변호사법 제31조의 구조적 문제

변호사법 제31조 제1항 제3호는 공무원·조정위원 또는 중재인으로서 취급한 사건의 수임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 조항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조정위원”의 개념이 불명확하다. 법원의 민사조정위원이나 행정기관의 조정위원은 명확히 포함되나, SIMC와 같은 사적 국제조정기관의 조정인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목적론적 해석상 모든 형태의 조정

인을 포함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실무상 일관된 해석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는 불명확하다.

둘째, 사건에 ‘실질적으로 관여한 정도’ 여부가 명시되어 있지 않다. 미국의 경우 Model Rule 1.12는 “personally and substantially participated”라는 요건을 통해 실질적 관여 여부를 판단하나, 한국법은 단순히 “취급”이라는 포괄적 표현을 사용하여 해석상 혼란을 야기한다.

셋째, 로펌 차원의 이익충돌 귀속(imputation) 문제가 불명확하다. 개별 변호사의 이익충돌이 소속 로펌 전체에 귀속되는지에 대한 명문 규정이 없어, SIMC사건과 같은 상황에서 로펌의 다른 변호사들이 어떤 제약을 받는지 불분명하다.

2.2 변호사윤리장전 제48조의 한계

변호사윤리장전 제48조는 법무법인 등의 사건수임에 있어서 이익충돌 회피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제48조 제2항은 “법무법인 등의 특정 변호사에게만 제22조 제1항 제4호 또는 제42조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당해 변호사가 사건의 수임 및 업무수행에 관여하지 않고 그러한 사유가 법무법인 등의 사건처리에 영향을 주지 아니할 것이라고 볼 수 있는 합리적 사유가 있는 때에는 사건 수임이 제한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은 일견 미국의 스크리닝(screening) 제도와 유사해 보이나, 다음과 같은 근본적 한계를 가지고 있다. 첫째, “그러한 사유가 법무법인 등의 사건처리에 영향을 주지 아니할 것이라고 볼 수 있는 합리적 사유”를 판단하는 구체적

34) THE STATE BAR OF CALIFORNIA STANDING COMMITTEE ON PROFESSIONAL RESPONSIBILITY AND CONDUCT FORMAL OPINION NO. 2021-205
<https://www.calbar.ca.gov/Portals/0/documents/ethics/Opinions/Formal-Opinion-No-2021-205-Duties-to-Pro prospective-Client.pdf>

기준이 없다. 미국 캘리포니아의 경우 Kirk v. First American Title Insurance Co.(2010) 판례³⁵⁾를 통해 확립된 네 가지 필수 요소, 즉 적시성(timeliness), 통지(notice), 수수료 배분 금지(no fee sharing), 차단된 변호사의 완전한 격리(complete isolation) 등의 구체적 요건이 있으나, 한국은 이러한 세부 기준이 없다.

둘째, 정보차단벽의 구축과 운영에 대한 절차적 요건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 SIMC사건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어떤 방식으로 정보를 차단하고, 누가 이를 감독하며, 어떤 기록을 유지해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 지침이 없다.

셋째, 사후적 검증 시스템이 없다. 미국의 경우 법원이 스크리닝의 적절성을 사후적으로 심사할 수 있는 반면, 한국은 이러한 사법적 통제 메커니즘이 없어 실효성이 담보되지 않는다.

2.3 로펌 차원의 이익충돌 관리 기준 부재

SIMC사건은 개별 변호사가 아닌 로펌 차원의 이익충돌 관리 실패를 보여준다. 한국 변호사 윤리 규정은 개인 변호사의 의무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대형로펌의 조직적 관리 의무에 대한 규정이 미흡하다.

복수 당사자 사이의 이익충돌시 변호사의 이익충돌회피의무에 따라 변호사의 전원 사임 의무를 주장하는 견해는 있으나, 로펌 차원의 시스템적 접근에 대한 논의는 부족하다.³⁶⁾ SIMC 사건은 이러한 시스템적 접근의 필요성을 극명하게 보여준다.

3. 당사자 접촉 금지 규정

3.1 현행 규정의 불명확성

변호사윤리장전 제45조는 “변호사는 수임하고 있는 사건의 상대방 당사자에게 변호사 또는 법정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호사 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나 기타 다른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한 상대방 당사자와 직접 접촉하거나 교섭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다. 그러나 이 규정은 일반적인 대리 관계를 전제로 한 것으로, 조정 절차의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한다.

SIMC사건에서 조정인이 소속된 로펌의 파트너 변호사가 일방 조정 당사자의 직원에게 직접 연락한 행위는 윤리 위반으로 볼 수 있으나 현행 규정은 “법률대리인”의 개념을 소송대리인 중심으로 이해하고 있어, 조정 절차에서의 대리인이나 조정인의 존재가 당사자 접촉에 어떤 제약을 가하는지 불명확하다.

조정 절차에서는 조정인이 당사자 간의 정보흐름을 관리하는 핵심적 역할을 수행한다. 따라서 제3자가 일방 당사자에게 직접 접촉하는 것은 조정의 중립성과 절차적 공정성을 근본적으로 훼손할 수 있으므로 규정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3.2 조정 절차의 특수성 미반영

싱가포르 국제조정센터 조정규칙(SIMC Mediation Rules) 제10조는 조정 진행 중 당사

35) 미국 캘리포니아주 항소심 법원(Court of Appeal) 판결로, 한 변호사가 상대방 측과 관련된 비밀 정보를 알고 있는 경우, 그 변호사가 소속된 법률사무소 전체가 자동적으로 사건에서 제명(불가항력으로부터 비롯된 이해상충 문제 때문에)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판시한 사건이다. 원고 측 대리인이었던 변호사가 피고 First American Title Insurance Co.의 사건을 담당한 법률사무소에 합류하면서 이해상충 문제가 제기되었다. 1심 법원은 법률사무소 전체를 제명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이해상충 때문에 전 법률사무소를 자동 제명시켜야 하는 것은 아니며, 충실한 격리 조치가 입증되면 사건 수행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였다. 즉, 이 판결은 법률사무소의 ‘자동 제명’은 불필요하며, 격리 조치를 통한 이해상충 해소가 가능하다는 점을 명확히 하면서 정보차단벽의 구체적인 요건들을 확립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판결이다.

<https://law.justia.com/cases/california/court-of-appeal/2010/b218956/>

36) 이태영(2017), “변호사의 비밀유지의무” 『인권과정의』 제469호, 2017., 22~41면.

자들이 조정인을 통해서만 소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조정인이 정보의 흐름을 통제함으로써 당사자 간 힘의 불균형을 조정하고, 감정적 대립을 완화하며, 창의적 해결방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한국의 변호사 윤리 규정은 이러한 조정 절차의 특수성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SIMC사건과 같이 조정 절차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한 명확한 규범적 근거가 없는 상황이다.

SIMC사건에서 조정인이 소속된 로펌의 한 변호사가 당사자들의 동의 없이 일방 당사자 소속 직원에게 직접 연락한 행위는 명백한 윤리 위반이다. 그러나 한국 변호사윤리장전의 당사자 접촉 제한 규정은 국제조정의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조정 절차에서는 당사자 간 직접 소통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조정인이 아닌 제3의 변호사가 당사자에게 접촉하는 것은 조정의 중립성과 신뢰성을 근본적으로 훼손한다. 현행 규정은 이러한 상황에 대한 명확한 금지 조항이 없다.

4. 징계 제도의 구조적 문제

4.1 징계 절차의 불투명성

현재 징계절차와 관련하여 가장 큰 문제점은 절차의 불투명성이다. 진정인은 사건 처리 과정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지 못하며, 피진정인이 제출한 서면조차 열람할 수 없다. 이는 적법절차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징계 제도에 대한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한다.

법무부가 박희승 국회의원실에 제출한 2020

년~2025년 연도별 변호사 징계 건수 자료를 토대로 징계 수가 많은 순서대로 정리하면 변호사업무광고규정 위반이 266건으로 가장 많고, 이어서 품위유지의무위반이 199건(제명 5, 정직 28, 과태료 141, 견책 25), 성실의무위반이 92건(제명 9, 정직 17, 과태료 53, 견책 13), 법무법인 등의 퇴직공직자 활동내역 제출위반이 49건, 공직퇴임변호사 수임자료 제출위반이 39건, 기타가 30건(제명 1, 정직 4, 과태료 21, 견책 4), 수임제한위반이 25건(과태료 14, 견책 11), 사무직원 신고의무 위반이 23건, 변호사 아닌 자와의 동업금지 위반이 10건, 변호인선임서 미제출·지방회 미경유가 6건(과태료 4, 견책 2), 이중사무소 개설금지 위반이 4건(과태료 4), 겸직금지의무위반이 2건, 계쟁권리 양수금지 위반이 1건이며, 공익활동 미이행, 연고관계 등의 선전금지 위반, 외국법자문사법 위반, 특정변호사 수임자료 제출위반은 모두 0건으로 집계되었다.(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징계위원회 결정 기준)³⁷⁾ 비밀유지의무가 0건은 아니나 매우 적은 것으로 추정되며, 국제조정 관련 징계 사례는 거의 찾아볼 수 없어, 비밀유지나 국제조정 분야에 대한 징계 기준과 절차의 공백이 존재함을 알 수 있다.

또한 변호사 윤리장전의 성격을 ‘회칙’으로 불지, 회칙에 근거하여 제정한 ‘규칙’으로 해석할지 여부에 따라 변호사윤리장전을 위반한 행위가 징계사유가 될 수 있는지 논란의 여지가 있다.³⁸⁾ 변호사법 제91조 제2항의 징계사유에는 ‘회칙을 위반한 경우’는 명시되어 있지만, 회칙에 근거하여 제정된 ‘규칙’은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37) https://www.lawissue.co.kr/view.php?ud=2025062318261497899a8c8bf58f_12 (2025. 9. 11. 최종방문)

38) 손창완(2019), “미국의 변호사 징계제도의 변호사 징계사유 및 징계기준에 관한 연구” 『법조』 제68권 제6호, 313~314면. 대한변호사협회 회칙 제57조 [규칙 및 규정] ① 이회는 법령에 의하여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를 처리하고, 회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회칙을 시행하기 위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4.2 징계 기준의 불명확성

현행 변호사징계규칙은 징계 종류로 제명, 정직, 과태료, 견책을 규정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양정 기준이 불명확하다. SIMC사건과 같은 복합적 윤리 위반(비밀유지의무 위반, 당사자 직접 접촉, 명예훼손)에 대한 종합적 판단 기준이 없다. 미국의 ABA Standards for Imposing Lawyer Sanctions는 위반 행위의 의도성, 실제 또는 잠재적 피해의 정도, 가중·감경 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체계적 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나, 한국은 이러한 체계적 접근이 없다.³⁹⁾

구치소 수용자 다수 접견 후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과태료 500만 원 처분을 받은 변호사의 경우⁴⁰⁾와 비교할 때, SIMC사건의 심각성은 훨씬 크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현행 규정상 이러한 비교 형량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

4.3 국제 사건에 대한 관할 한계

국제조정 사건은 관할과 집행의 복잡한 문제를 제기한다. 현행 변호사법은 속인주의 원칙에 따라 한국 변호사가 해외에서 행한 행위에 대해서도 징계권을 행사할 수 있으나, 실무상 해외 사건에 대한 조사와 증거 수집의 어려움으로 인해 실효성이 떨어진다.

더구나 국제조정기관과의 협력 체계가 구축되어 있지 않아, SIMC와 같은 국제기관에서 발생한 윤리 위반 사항에 대한 정보 공유나 공동 대응이 불가능하다. 이는 국제업무가 증가하는 현실과 맞지 않는 제도적 공백이다.

5. 소결: SIMC 사건에서 드러난 문제의 종합

5.1 규범 체계의 구조적 한계

SIMC 사건을 통해 드러난 한국 변호사 윤리 규정의 문제점은 단순한 개별 조항의 미비가 아니라 구조적이고 체계적인 한계에 기인한다. 첫째, 추상적이고 불명확한 규범이다. 변호사법 제26조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이라는 포괄적 표현만 사용할 뿐, 대형로펌에서 누구와 어떤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지 구체적 기준이 없다. 정보차단벽 제도가 부재하여 조정인이 천 명의 로펌 구성원에게 당사자 정보를 공개한 행위가 적법한지 판단할 수 없었다. 둘째, 개인 중심의 낡은 규범 체계이다. 1949년 제정 당시 단독 개업 변호사를 전제로 설계되어, 현대 대형로펌의 조직적 특성을 전혀 반영하지 못한다. 변호사법 제31조는 조정인의 지위에 적용하기 어렵고, 조정 종료 후 동일 로펌의 상대방 대리 허용 여부에 대한 지침이 전무하다. 셋째, 실효성 없는 징계 제도이다. SIMC 사건은 적절한 심리 없이 종결되었고, 이 과정에서 절차의 불투명성이 드러났다.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2020~2025년간 대형로펌 소속 변호사 징계는 극히 드물며, 실효성 있는 집행 메커니즘이 결여되어 있다.⁴¹⁾ 넷째, 국제조정의 특수성 미반영이다. UNCITRAL Model Law, IBA Guidelines, SIMC Mediation Rules 등 국제 기준과의 정합성이 전혀 없다. 조정인의 중립성 의무, 조정 과정의 비밀유지, 조정 종료 후 당사자 대리 금지 등 국제조정에 특유한 윤리 기준이 명시되지 않았다. 2019년 싱가포르 조정협약 가입, 2025년 이행법률안 제정 등 한국이 국제조정 허브를 지

39) https://cdn.ca9.uscourts.gov/datastore/library/2013/02/26/Girardi_sanctions.pdf (2025. 9. 11. 최종방문)

40) https://www.lawtimes.co.kr/news/159391?utm_source=chatgpt.com (2025. 9. 11. 최종방문)

41) <https://www.legal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87425> (2025. 10. 16. 최종방문)

향하는 것과 심각한 괴리를 보인다.

5.2 체계적 개혁의 필요성

이러한 구조적 문제는 개별 조항의 개정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으며, 한국 변호사 윤리 체계 전반에 대한 근본적 재검토가 필요하다. 특히 비밀유지와 정보차단벽의 구체적 기준, 대형로펌 환경에 적합한 이익충돌 관리 시스템, 국제 분쟁해결 특별 규정, 실효성 있는 징계 제도가 동시에 개선되어야 한다. 다음 장에서는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선진적 규정 체계와의 비교를 통해 구체적인 개선 방향을 모색한다.

제4장 미국 캘리포니아주와의 비교법적 고찰

1. 비교법적 검토의 필요성

1.1 캘리포니아주 선정의 이유

본 장에서는 SIMC사건과 동일한 상황이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발생했을 경우 적용될 법적 규율을 검토함으로써, 한국 변호사 윤리 규정의 개선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캘리포니아주를 비교 대상으로 선택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캘리포니아는 미국에서 가장 많은 변호사가 활동하는 관할권으로서, 2024년 기준 약 19만 명의 현직 변호사가 등록되어 있다.⁴²⁾ 이에 비추어 캘리포니아 주는 대규모 법조 인력을 관리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을 것으로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둘째, 캘리포니아는 미국에서 가장 엄격한 비밀유지의무를 부과하는 관할권 중 하나로, Business and Professions Code Section 6068(e)(1)을 통해 거의 절대적인 비밀

보호를 규정하고 있다. 셋째, 실리콘밸리와 할리우드를 중심으로 한 혁신적 비즈니스 환경은 복잡한 이익충돌 상황을 다루는 풍부한 판례와 실무 경험을 축적하게 했다.

캘리포니아의 변호사 윤리 규정은 엄격한 의무 부과와 실무적 유연성의 균형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우리나라가 참고할 만한 모델이라 생각한다. 특히 대형로펌의 실무를 고려한 정교한 스크리닝 제도는 한국의 제도 개선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1.2 규범 체계의 구조적 차이

캘리포니아와 한국의 변호사 윤리 규범 체계는 근본적인 구조적 차이를 보인다. 캘리포니아는 주 대법원이 제정한 Rules of Professional Conduct(이하 'CRPC')와 주 의회가 제정한 Business and Professions Code가 상호 보완적으로 작동한다. CRPC는 구체적인 행위 규범을 제시하고, Business and Professions Code는 변호사 자격과 징계의 법적 근거를 제공한다.

반면 한국은 국회가 제정한 변호사법과 대한변호사협회가 자율적으로 제정한 변호사윤리장전의 이원적 구조를 취한다. 이러한 구조적 차이는 규범의 구속력과 집행력에 있어 중요한 차이를 만든다. 캘리포니아의 CRPC 위반은 직접적인 징계 사유가 되는 반면, 한국의 변호사윤리장전 위반은 윤리장전의 성격을 회칙으로 해석하는 경우에만 징계사유가 될 수 있다.

2. 비밀정보 보호 체계의 비교

2.1 Rule 1.6과 변호사법 제26조의 비교

캘리포니아 Rule 1.6은 비밀정보 보호에 관한

42) <https://apps.calbar.ca.gov/members/demographics.aspx> (2025. 9. 11. 최종방문)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다. Rule 1.6(a)는 “변호사는 대리 관계에서 알게 된 클라이언트와 관련된 정보를 공개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면서, 동시에 명확한 예외 사유를 열거한다. 이는 한국 변호사법 제26조의 단순한 규정과 대조적이다.

한국법의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이라는 표현과 관련하여 비밀의 범위에 대해서, 업무수행과 관련없이 알게된 정보는 비밀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견해와 직무는 예시적인 것일 뿐 직무 외적으로 알게된 비밀을 포함한다는 견해가 대립한다.⁴³⁾ 반면, 캘리포니아의 ‘information relating to the representation’은 훨씬 포괄적인 보호를 제공한다. 실제로 캘리포니아 법원은 의뢰인이 비밀로 지정하지 않은 정보라도 대리 관계에서 취득한 모든 정보를 보호 대상으로 본다.

캘리포니아 Rule 1.6의 비밀보호 체계는 매우 엄격하면서도 체계적으로 설계되어 있다. Rule 1.6(a)는 Business and Professions Code Section 6068(e)(1)에 의해 보호되는 정보를 의뢰인의 informed consent가 있거나 Rule 1.6(b)가 허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⁴⁴⁾ Rule 1.6(b)는 변호사의 비밀유지의무에 대한 유일한 실제적 예외를 규정하는데, 이는 “변호사가 합리적으로 믿기에 사망(death) 또는 중대한 신체적 위해(substantial bodily harm)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범죄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합리적으로 믿는 범위 내에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허용적(permissive) 규정으로, 변호사에게 공개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재량권을 부여한다. 중요한 것은 Rule 1.6(b)에 규정된 예외

는 오직 이 하나뿐이라는 점이다. 미국 변호사 협회(ABA)의 Model Rule 1.6(b)가 7가지 예외를 두고 있는 것과 달리, 캘리포니아는 의뢰인 비밀보호를 훨씬 더 엄격하게 보호한다. 한국 변호사윤리장전 제18조 제4항이 “중대한 공익상의 이유, 의뢰인의 동의, 변호사 자신의 권리방어”를 비밀유지의무의 예외로 규정하는 것과 비교하면, 캘리포니아의 접근은 비밀보호의 범위는 넓게, 예외는 극히 제한적으로 설정한다는 특징을 보인다. Business and Professions Code Section 6068(e)(1)의 “at every peril to himself or herself to preserve the secrets”(자신에게 위험이 닥치더라도 의뢰인의 비밀을 보존할 것)라는 표현⁴⁵⁾은 캘리포니아가 비밀유지의무를 변호사 직업윤리의 최고 가치로 보고 있음을 명확히 보여준다.

2.2 변호사-의뢰인 특권의 실질적 보장

캘리포니아 Evidence Code Section 950-962는 변호사-의뢰인 특권을 상세히 규정한다. 이는 단순한 비밀유지의무를 넘어 법적 절차에서 정보를 보호하는 증거법적 특권이다. 한국의 경우 형사소송법상 제한적 압수수색 거부권만 인정될 뿐, 민사소송이나 행정절차에서는 명확한 보호가 없다.⁴⁶⁾

캘리포니아에서는 변호사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시 특별한 절차가 적용된다. Penal Code Section 1524(c)는 변호사 사무실 압수수색 시 “Special Master”를 지정하여 특권이 적용되는 자료를 사전에 심사하도록 규정한다.

43) 이태영, 앞의 글, 27~28면.

44) California Rules of Professional Conduct, Rule 1.6(a)(Effective November 1, 2018): “A lawyer shall not reveal information protected from disclosure by Business and Professions Code section 6068, subdivision (e)(1) unless the client gives informed consent, or the disclosure is permitted by paragraph (b) of this rule.”

45) California Business and Professions Code Section 6068(e)(1): “It is the duty of an attorney to...maintain inviolate the confidence, and at every peril to himself or herself to preserve the secrets, of his or her client.”

46) 서주연외 2, 앞의 글, 112~118, 135~136면.

2.3 로펌 내부 정보 공유의 엄격한 제한

SIMC사건의 핵심 문제인 로펌 내부 정보 공유에 대해, State Compensation Insurance Fund v. Drobot (2016) 판례는 로펌 내부에서의 정보 공유도 엄격히 제한되어야 함을 명시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need-to-know basis”가 아닌 무분별한 정보 공유는 비밀유지의무 위반이라고 판시했다.

이 사건은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에서 로펌 내부의 비밀유지의무 위반과 이해충돌 문제를 다룬 대표적인 판례로, 로펌이 피고 Drobot을 대리한 뒤 동일 사건과 관련된 원고인 State Compensation Insurance Fund를 대리하려 한 상황에서 비롯되었다. 법원은 해당 로펌(Irell & Manella LLP)이 이해충돌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지 않았고, 내부에서 정보를 ‘need-to-know basis’ 이상의 범위로 공유한 정황을 문제 삼았다.

법원은 명확히 “로펌 내 정보 공유는 반드시 해당 사건 수행에 필요한 범위 내로 제한되어야 하며, 이를 넘어서는 정보 접근은 비밀유지의무 위반(confidentiality breach)에 해당한다”고 판시하며, 로펌 전체의 대리 자격을 박탈(disqualification)하였다.

“The law firm’s internal communications breached the duty of confidentiality because information was shared beyond a need-to-know basis.”

— State Comp. Ins. Fund v. Drobot, 192 F. Supp. 3d 1080, 1097 (C.D. Cal. 2016)

이 판례는 단일 변호사의 일탈이 아닌 로펌 전체의 조직 차원에서 정보 흐름을 통제하고, 이해충돌 가능성을 방지할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특히 다음과 같은 내부 정책이 요구된다.

- ① 정보 접근 통제: 사건별로 정보 접근 권한을 철저히 제한하는 “need-to-know only” 원칙의 적용
- ② 윤리 방화벽(Ethical Wall) 구축: 동일 로펌 내에서도 독립된 팀 간의 분리 유지
- ③ 정보공유 기록 유지: 비밀 유지의무 대상 정보가 어떤 범위로 유출되었는지 추적 가능한 로그 시스템 확보
- ④ 조기 충돌 점검 시스템: 사건 수임 전, 이해관계 분석 및 잠재적 충돌 감지 자동화

California Lawyers Association Ethics Committee Formal Opinion 2021-1은 이익충돌 확인을 위한 정보 공유도 최소한으로 제한해야 한다고 명시한다. 구체적으로, 당사자의 이름과 사건의 일반적 성격만을 공유하되, 민감한 정보는 conflicts checking system에 입력하는 담당자만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는 SIMC 사건에서 약 천여명에게 일괄 이메일을 발송한 것과 극명한 대조를 이룬다.

3. 이익충돌 관리 체계의 비교

3.1 Rule 1.7-1.10의 체계적 접근

캘리포니아는 Rule 1.7부터 1.10까지 이익충돌에 관한 체계적인 규정을 두고 있다. Rule 1.7은 현재 의뢰인 간 충돌, Rule 1.9는 전 의뢰인과의 충돌, Rule 1.10은 로펌 차원의 충돌 귀속을 각각 규율한다. 이러한 체계적 접근은 한국의 단편적 규정과 대조된다.

캘리포니아의 이익충돌 규정은 상황별로 세분화되어 있어 실무상 적용이 명확한 반면, 한국은 포괄적 규정에 의존하여 예측가능성이 떨어진다.⁴⁷⁾ 특히 Rule 1.7(a)의 “directly adverse”와 “significant risk” 기준은 구체적인 판단 지침을 제공한다.

3.2 정보차단벽(Ethical Screen)

확립된 원칙에 정면으로 배치된다.

3.2.1 캘리포니아의 Ethical Screen 요건

Rule 1.10(a)(2)는 특정 조건 하에서 스크리닝을 통해 이익충돌을 해소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그러나 이는 매우 엄격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California Lawyers Association의 지침에 따르면, 효과적인 스크리닝은 다음 요소를 포함해야 한다.

첫째, 적시성(timeliness) 요건으로, 스크리닝은 기밀정보가 공유되기 전에 설치되어야 한다. Kirk v. First American Title Insurance Co.(2010) 판결은 “사후적 스크리닝은 이미 오염된 우물을 정화할 수 없다”는 비유로 이를 강조했다. 둘째, 물리적·전자적 차단으로, 차단된 변호사는 해당 사건 파일에 물리적으로나 전자적으로 접근할 수 없어야 한다. 셋째, 재정적 차단으로, 차단된 변호사는 해당 사건에서 발생하는 수입료를 받을 수 없다. 넷째, 서면 통지로, 영향받는 당사자에게 스크리닝 조치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한국의 변호사윤리장전 제48조가 ‘사건처리에 영향을 주지 아니할 것이라고 볼 수 있는 합리적 사유가 있는 때’라는 추상적 기준만 제시하는 것과 달리, 캘리포니아는 검증 가능한 객관적 요건을 제시한다. 이러한 구체성은 로펌이 실제로 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하는데 명확한 지침이 된다.

이것들은 “universally mandatory elements”(보편적 필수 요소)로 불리고, 위반 시 해당 screening은 무효가 된다.

SIMC사건은 이 모든 요건을 위반했다. 정보가 이미 전체 구성원에게 공유된 후에는 효과적인 차단이 불가능하며, 이는 Kirk v. First American Title Insurance Co. (2010) 판례에서

3.2.2 ABA Model Rule 1.10에 따른 로펌 전체의 자격박탈

ABA Model Rule of Professional Conduct 1.10은 “imputation of conflicts of interest”에 관한 규정으로, 한 변호사에게 발생한 이익충돌(conflict of interest)이 소속 로펌의 ‘다른 모든 변호사에게도 귀속된다(imputed)’는 원칙을 명확히 규정한다. 이 조항은 조직 내에서 기밀정보가 유통되거나 사건 처리가 공동으로 이루어지는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로펌이라는 단위는 윤리적 책임과 이익충돌 위험을 공유하는 통합된 법적 실체로 간주한다.

Rule 1.10(a)는 다음과 같이 명시한다:

“(a) While lawyers are associated in a firm, none of them shall knowingly represent a client when any one of them practicing alone would be prohibited from doing so by Rules 1.7 or 1.9…”

즉, 로펌 내 한 변호사가 기밀정보를 보유하거나 이해상충의 지위에 있을 경우, 그 자체로 전 구성원의 대리 자격도 제한된다. 이 원칙은 심지어 그 변호사가 현재 해당 사건에 직접 관여하고 있지 않더라도 적용된다.

SIMC사건은 조정인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침해하는 윤리 위반이 발생했을 경우, 그 결과가 단순한 내부 주의 수준을 넘어 조정인의 직무 자격 자체가 박탈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이다. 본 사건에서는 조정인이 속한 로펌의 다른 파트너 변호사가 조정 절차 도중 일방 당사자 직원에게 무단으로 연락하여 사건 관련 잘

47) 김제완, 앞의 글, 104~108면.

못된 정보를 획득하여 배포하는 중대한 이해상충 위반 행위를 저질렀다. 이 행위는 Model Rule 4.2(상대방 당사자 접촉 금지)를 정면으로 위반함과 동시에, Rule 1.10이 요구하는 정보 차단적 적시성(timeliness)과 내부 소통 금지(communication ban) 요건 모두를 결여한 것으로 간주된다. 특히 정보 접근이 이미 발생한 뒤에야 사후적으로 취해진 윤리적 차단 조치는 실효성이 없고, 이로 인해 해당 조정인에 대한 당사자의 신뢰는 회복 불가능한 수준으로 훼손되었다.

이 사건은 Rule 1.10에 규정된 예외 조항—이른바 “lateral lawyer exception”—이 오직 타 로펌에서 새로 영입된 변호사에게 한정되어 적용되며, 기존 소속 변호사나 로펌 내부에서 발생한 정보 누출에는 원칙적으로 screening을 통한 해소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구조적 한계를 분명히 드러낸다. 특히 조정인의 역할은 단순한 문서 정보의 전달자가 아니라 당사자의 이해관계를 비공식적으로 포착하고 조율하는 기능을 포함하는 만큼, 그 지위에서 파생된 기밀성과 충실의무 위반은 제도 전반의 공정성과 신뢰 기반을 훼손할 위험을 내포한다. 따라서 본 사건은 조정인의 중립성 문제를 단순히 개별 직무윤리의 실패로 환원할 수 없으며, 로펌 단위의 구조적 윤리통제 실패가 곧 조정 제도 자체의 정당성을 침식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실증적으로 보여준다.

3.3 제3자 중립인의 의무(Rule 2.4)

조정인을 포함한 제3자 중립인의 윤리적 의무

는 미국 변호사윤리규정(ABA Model Rules)과 캘리포니아 변호사윤리규정(California Rules of Professional Conduct, 이하 “CRPC”) 양측에서 명확히 규정된다. ABA Model Rule 2.4는 조정인을 “2명 이상의 비의뢰인을 중립적으로 돕는 제3자”로 정의하며, 그 지위에서 획득한 정보를 ‘need-to-know basis’에 따라 엄격히 제한된 방식으로만 공유할 수 있다고 명시한다. 특히, 관련 Commentary는 “대부분의 조정인(mediators)은 로펌의 내부 변호사에게조차 사건 정보를 공유하지 않도록 주의한다”고 서술하며, 로펌 내부 정보 공유 자체가 비밀유지의무(confidentiality)의 위반이 될 수 있음을 지적한다.⁴⁸⁾

이와 동일한 기준은 캘리포니아 윤리규정에도 적용된다. CRPC Rule 2.4는 조정인의 중립성과 이해충돌 방지를 위해, 로펌 내부에서도 비밀 정보의 불필요한 공유는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해당 로펌 전체가 이해당사자를 대리할 수 없게 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명시한다.

더불어, CRPC Rule 1.12는 조정인이나 중재인 등 제3자 중립인이 사건에서 물러난 이후에도 획득한 정보의 보호를 유지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로펌 전체가 해당 사건에서 제외(disqualification) 될 수 있음을 경고한다. 이 조항은 특히 조정인의 후속 행위, 즉 해당 사건과 관련된 로펌 구성원의 수임행위 전반에 제약을 가하는 규범적 기반이 된다.⁴⁹⁾

이러한 규정들은 모두, 제3자 중립인으로서의 조정인이 수행하는 조정 행위가 단순한 중재나 상담 이상의 법적 신뢰 구조를 전제로 하며, 그 과정에서 생성된 정보가 ‘보다 높은 수준의 비

48) ABA Model Rules of Professional Conduct, Rule 2.4 (“Lawyer Serving as Third-Party Neutral”) & Comment to Rule 4.5.2 (2020); see also *State Comp. Ins. Fund v. Drobot*, 192 F. Supp. 3d 1080, 1097 (C.D. Cal. 2016) (need-to-know 기준 초과 정보 공유는 비밀유지의무 위반)

49) California Rules of Professional Conduct, Rule 1.12 (Former Judge, Arbitrator, Mediator or Other Third-Party Neutral), Comment [2] (2023).

밀보호와 구조적 차단 장치(ethical screen 또는 Chinese wall)’를 요구함을 뒷받침한다.

4. 당사자 접촉 규제의 비교

4.1 Rule 4.2의 명확한 금지

로펌 소속 변호사가 상대방 당사자에게 법정 대리인(법률 대리인)이 있는 상황에서 상대방 당사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행위는 California Rules of Professional Conduct Rule 4.2(“Communication with a Represented Person”) 위반이다. 이 규정은 “사전 동의 없는, 대표인이 있는 당사자와의 직접·간접 연락”을 금지하고 있으며, 예외는 상대방 변호사의 명시적 동의나 법원의 허가뿐이다.⁵⁰⁾ 이는 한국 변호사윤리장전 제26조와 유사하나, 적용 범위와 예외가 더 명확하다.

캘리포니아 대법원은 In re Dyer, 18 Cal. 3d 359 (1976) 판례에서, 변호사가 직접 접촉한 행위는 “법조 윤리의 근본 원칙을 위반하는 행위”라고 했다. 이로 인해 해당 변호사에게 자격정지(disbarment) 처분이 내려졌으며, 이는 Rule 4.2 위반이 가져올 수 있는 가장 무거운 제재의 사례로 평가된다.⁵¹⁾ SIMC사건에서 로펌 파트너가 조정 당사자의 직원에게 직접 연락한 행위는 Rule 4.2의 위반으로 해석될 수 있다. 특히 조정 진행 중에는 조정인이 정보 흐름을 통제하는 것이 필수적이므로, 제3자의 직접 접촉은 더욱 엄격히 금지된다.

4.2 조정 절차에서의 특별한 고려

캘리포니아는 Evidence Code Section 1115-1128을 통해 조정 절차의 비밀성을 특별히 보호한다. Section 1119는 “조정에서 이루어진 모든 소통은 비밀이며, 후속 절차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이는 조정의 효과성을 보장하기 위한 입법적 결단이다.

이러한 특별한 보호는 조정 절차에서의 당사자 접촉 금지를 더욱 엄격하게 만든다. 조정 외부의 제3자가 일방 당사자에게 접촉하여 정보를 취득하는 것은 조정의 비밀성을 우회적으로 침해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5. 제재 시스템의 비교

5.1 신속하고 엄격한 징계 절차

캘리포니아 주 변호사협회(State Bar of California)의 변호사 징계 절차는 강력한 자율 규제 모델에 기반하여 운영되며, 전담기관인 OCTC(Office of Chief Trial Counsel)가 모든 징계 절차의 초기 단계를 관장한다. 캘리포니아 주 변호사협회는 매년 수천 건의 윤리 위반 신고를 접수하여 신속한 예비 평가와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위법 혐의가 중대한 경우 임시 자격 정지도 가능한 구조를 갖추고 있다. 실제 징계 처분은 자격 박탈, 정직, 경고 등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진다. 정식 절차에 회부된 사건은 State Bar Court에서 전문 판사에 의해 신속히 심리되며, 이는 징계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작동한다. 2024년 기

50) “A lawyer shall not communicate directly or indirectly about the subject of the representation with a person known to be represented by counsel, unless the lawyer has the consent of the other counsel or is authorized by law or court order.” Cal. Rules of Prof'l Conduct Rule 4.2(a) (2018)

51) In re Dyer, 18 Cal. 3d 359, 368 (1976): “The attorney’s direct contact with a represented party was a violation of fundamental ethical principles,” resulting in disbarment.

준 실제 징계 처분은 총 229명에 대해 이루어졌으며, 그 내역은 자격 박탈 68건, 실제정직을 포함한 보호관찰 85건, 유예정직을 포함한 보호관찰 33건, 견책 43건(공개 및 비공개 포함)으로 나타난다. 이는 미국 최대 변호사 수를 보유한 주답게 징계 건수 역시 높은 수준이며, 전체 윤리 절차가 예방과 신속한 대응을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음을 보여준다.⁵²⁾

조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중 윤리 위반 사례는 단순한 규범 위반을 넘어서 제도 전반의 정당성을 침식시키는 구조적 위협으로 간주된다. 특히 SIMC사건과 같이, 조정인(mediator)이 속한 로펌의 다른 파트너가 조정 중인 사건의 일방 당사자와 무단으로 접촉하고 사건 관련 정보를 획득한 경우, 이는 Model Rule 4.2(상대방 당사자 접촉 금지) 위반은 물론, Rule 1.10(이익충돌의 로펌 귀속)에서 요구하는 정보 차단 의무의 적시성과 실효성 요건을 동시에 침해한 것으로 평가된다.⁵³⁾ 또한, 중립적 제3자인 조정인의 지위가 훼손되었을 경우, 당사자의 신뢰 회복이 불가능해지며, 단순한 대리권 제한이 아닌 직무수행 자격 자체의 박탈로 이어진다.

미국 기준에서 이와 같은 위반 행위는 통상 1~3년의 정직 처분 또는 중대 사안일 경우 자격 박탈(disbarment)로 이어질 수 있으며,⁵⁴⁾ 복수의 위반이 중첩된 경우에는 사후적 screening도 무효로 간주되어, 제재 수위는 상향될 수 있다.⁵⁵⁾ 이처럼 조정인 신뢰의 다층적 위반은 직무 박탈, 징계로 이어지는 복합적 제재를 수반할 수 있다.

그런데 실제 SIMC사건에서는 이와 같은 심각한 윤리위반 사안에 대해서 서울지방법변호사

회, 대한변호사협회, 싱가포르 국제조정센터 모두 어떠한 제재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변호사 윤리 지배구조의 흠결을 보여준다.

5.2 민사상 책임 체계

SIMC사건과 같은 사안에서 조정인의 윤리 위반이 직무상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으로까지 확장될 수 있다는 점은, 변호사 징계 절차와 별개로 민사상 책임 구조를 함께 고려해야 함을 시사한다. 캘리포니아 주법에 따르면, Business & Professions Code §6086.8은 “변호사의 직무상 과실 또는 부정행위로 인해 법원이 손해배상 판결을 내린 경우, 해당 법원은 그 사실을 의무적으로 State Bar에 보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⁵⁶⁾

SIMC사건의 구조상, 조정인 또는 그 소속 로펌의 행위로 인해 발생한 민사상 손해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유형으로 구성될 수 있다. 첫째, 조정 절차의 무산으로 인한 직접적 경제적 손실(e.g., 거래 중단, 기회비용의 발생), 둘째, 기밀 유출 및 부적절한 접촉에 따른 명예훼손 및 정신적 손해, 셋째, 고의적 위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입증될 경우 적용 가능한 징벌적 손해배상(punitive damages) 가능성이다. 이러한 민사 청구는 통상적으로 징계와는 별개로 제기되며, 실제로는 전문직업배상책임보험(Legal Malpractice Insurance)으로도 보상 범위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다. 일반적인 전문직업배상책임보험 약관에서는 “고의적 또는 악의적 행위”가 보장 제외 대상에 해당되거나, “중재·조정 과정 중 발생한 손해”를 면책 대상으로 규정하는 사례(“lawyer is

52) State Bar of California(2024). Annual Discipline Report, FY 2023 - 2024. Retrieved from <https://www.calbar.ca.gov/Portals/0/documents/reports/2024-Annual-Discipline-Report.pdf> (2025. 6. 21. 최종방문)

53) ABA Model Rules of Professional Conduct, Rule 4.2, Rule 1.10.

54) ABA Center for Professional Responsibility(2023). Standards for Imposing Lawyer Sanctions, §§6.2 & 7.0.

55) California Rules of Procedure of the State Bar, Rule 5.101 - 5.125.

56) California Business & Professions Code §6086.8 (West 2024).

acting in some capacity other than legal counsel”)가 많기 때문이다.⁵⁷⁾

결과적으로, 윤리 위반이 단지 직무정지 또는 자격박탈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에 의해 독립된 민사상 청구로 이어지고, 회복불가능한 신뢰 손실과 실질적 경제적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고려할 때, 조정인의 행위는 윤리적 책임, 제도적 책임, 법적 책임이 중첩된 삼중 구조 속에서 평가되어야 한다.

6. 예방적 통제 시스템의 비교

6.1 의무적 이익충돌 점검 시스템

캘리포니아의 대형로펌들은 정교한 이익충돌 점검 시스템을 운영한다. 이는 단순한 best practice가 아니라 Rule 1.7의 Comment에서 요구하는 의무사항이다. 시스템은 다음 요소를 포함해야 한다. 첫째, 모든 신규 사건 수임 전 의무적 충돌 점검이다. 둘째, 당사자뿐만 아니라 관련 당사자까지 포함한 포괄적 검색이다. 셋째, 과거 대리 이력을 포함한 시계열적 분석이다. 넷째, 정기적인 업데이트와 재점검이다. 2025년 Law Firm Conflict Check Software 시장 분석에 따르면, 대부분의 대형 로펌은 AI 기반 충돌 점검 시스템을 도입했다.⁵⁸⁾

6.2 윤리 교육과 내부 통제

캘리포니아는 Minimum Continuing Legal Education(MCLE) 제도를 통해 모든 변호사에게 3년마다 최소 4시간의 법조윤리 교육을 의무화한다.⁵⁹⁾

또한 Rule 5.1은 파트너 변호사에게 소속 변호사들의 윤리 준수를 감독할 의무를 부과한다. 파트너 또는 관리변호사는 소속 변호사들이 윤리규범을 준수할 수 있도록 “reasonable measures”를 취하고 감독해야 하며, 조직 수준에서 준수 체계를 마련할 의무가 있다. 이는 개인의 일탈을 조직 차원에서 예방하고 통제하는 시스템적 접근이다. 법조 선배들에게 이러한 의무가 부과되어 형식화 된 국내 법조 윤리교육도 현실화 할 필요가 있다.

7. 비교법적 시사점

캘리포니아 규정과의 비교는 한국 변호사 윤리 규정의 다음과 같은 개선 필요성을 보여준다:

첫째, 구체적이고 상세한 규정의 필요성이다. 캘리포니아 CRPC는 각 상황별로 명확한 행위 기준을 제시하고 있어 예측가능성이 높다.

둘째, 기술적 해결방안의 제도화가 필요하다. 단순히 윤리적 의무를 선언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 시스템 요건을 규정해야 한다.

셋째, 신속하고 효과적인 집행 메커니즘이 필수적이다. 캘리포니아의 경우 피해자의 고발이 즉각적인 조사와 제재로 이어지는 반면, 한국은 정해진 시한도 없이 사건 종결에 오랜 시간을 소모한다.

넷째, 다층적 책임 체계가 필요하다. 개인 변호사뿐만 아니라 로펌 차원의 조직적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

57) Susan Saab Fortney, Legal Malpractice Insurance: Surviving the Perfect Storm, 28 J. Legal Prof. 41, 62 - 63 (2004)

58) <https://www.researchandmarkets.com/reports/6055364/law-firm-conflict-check-software-market-global>

(최종방문: 2025. 9. 30.)

59) <https://www.calbar.ca.gov/Attorneys/MCLE-CLE/Requirements> (최종방문: 2025. 9. 30.)

제5장 한국 변호사 윤리 규정의 개선방안

1. 개선방안의 기본 방향

1.1 체계적·종합적 접근의 필요성

SIMC사건은 한국 변호사 윤리 규정의 구조적 한계를 총체적으로 드러냈다. 비밀유지의무의 모호성, 정보차단벽 제도 부재, 이익충돌 관리 미비, 징계 제도의 무력화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한 사건이므로, 개선방안도 개별 조항의 부분적 수정이 아닌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본 장에서는 법령 차원의 개정, 변호사윤리장전의 보완, 징계 제도의 개선, 예방적 시스템 구축이라는 네 가지 차원에서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각 개선방안은 제4장에서 검토한 캘리포니아의 사례와 국제 기준을 종합하여 한국적 맥락에 맞게 재구성하였다.

1.2 국제적 기준과의 조화

개선방안은 무조건적인 외국 제도의 이식보다는 한국 법체계와 실무 현실을 고려한 창조적 수용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본 개선방안은 국제적 기준을 수용하되, 한국의 법체계와 법문화를 고려하여 현실적으로 실현가능한 방안을 모색한다. 특히 대륙법계의 전통을 가진 한국이 영미법계의 제도를 수용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체계적 부조화를 최소화하면서도, 국제업무 수행에 필요한 글로벌 스탠더드를 충족할 수 있는 균형점을 찾고자 한다. 특히 국제분쟁해결 분야는 국제 기준과의 격차가 심각하다. 한국은 2019년 싱가포르 조정협약에 가입하고 2024년 대한상사중재원 국제조정규칙을 시행했으며,

2025년 9월 법무부는 싱가포르 조정협약 이행법률을 제정하는 등 국제조정 허브를 지향하고 있다. 그러나 변호사 윤리 규정은 이러한 변화를 전혀 따라가지 못하고 있어, 제도와 규범의 괴리가 심화되고 있다.

1.3 현행 규정의 한계와 국제 기준과의 격차

한국은 민사조정법 제11조의 공평성 원칙, 제20조의 비공개 원칙 등 단편적 규정만 존재한다. 의료분쟁조정법, 콘텐츠산업진흥법 등 개별법에 비밀유지의무가 산재하나, 통일된 윤리 기준은 존재하지 않는다.⁶⁰⁾ 대한상사중재원은 중재인 윤리강령을 운영하나 조정인 윤리강령은 미제정 상태다.

국제적인 기준들과 비교하면 한국은 ① 이해충돌 판단의 구체적 기준, ② 권력불균형 대응 방안, ③ 법률 조언과 조정의 구별, ④ 조정 종료 의무 상황 등에서 규정이 미비하다.

1.4 통합적 윤리 기준 제정 방안

첫째, 대한변호사협회 차원의 ‘변호사-조정인 윤리강령’ 제정이 필요하다. 변호사법상 변호사의 조정 업무 수행 시 준수사항을 명확히 해야 한다.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이 구성할 수 있다:

- ① 이중 역할의 명확한 구분: 변호사-조정인은 법률 대리인과 중립적 조정인 역할을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 조정 과정에서 법률 조언 제공을 금지하고, 당사자에게 별도 법률 자문을 구할 것을 권고해야 한다.⁶¹⁾
- ② 강화된 이해충돌 기준: IBA Guidelines의 3단계 분류를 참고하여 구체적 상황별 대응 기준을 마련한다. 특히 변호사로서 과거 수

60) 김용섭(2021), “변호사법 제109조와 민간조정 활성화를 위한 입법과제” 『인권과정의』 제502호, 47면.

61) Model Standards of Conduct for Mediators(2005), Standard VI.

임 이력이 있는 당사자가 관련된 경우 엄격한 기준을 적용한다.⁶²⁾

③ 적극적 공정성 확보 의무: 단순한 중립성을 넘어 당사자 간 협상력 불균형 시 절차적 조정을 통한 실질적 공정성 확보 의무를 규정한다. 뉴질랜드 모델을 참고하여 조정 부적합 상황의 판단 기준을 제시한다.⁶³⁾

④ 계속교육 의무: 조정 기법, 협상 이론, 문화적 역량 등에 대한 정기적 교육 이수를 의무화한다. 국제조정 수행 시 해당 지역 문화와 법제에 대한 이해도 요구한다.⁶⁴⁾

둘째, 싱가포르 조정협약 비준에 대비한 국제수준의 윤리 기준 정립이 시급하다. 협약 제5조의 집행거부사유를 고려하여 국내 조정인 윤리위반의 판단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⁶⁵⁾

셋째, 윤리위원회 설치와 징계 절차를 제도화해야 한다. 캘리포니아의 State Bar 징계 시스템을 참고하여 윤리 위반에 대한 단계적 제재 방안을 마련한다.⁶⁶⁾

1.5 입법정책적 기본 방향

조정기본법 또는 조정절차법 제정 시 조정인 윤리에 관한 장(章)을 별도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는 ① 조정인의 기본 의무, ② 이해충돌 방지, ③ 비밀유지, ④ 전문성 유지, ⑤ 절차적 공정성, ⑥ 윤리 위반 시 제재를 포함해야 한다.⁶⁷⁾

변호사법 개정을 통해 제109조 벌칙과 조정인 윤리 위반의 관계를 명확히 하고, 변호사-조정인의 특수한 의무를 규정하는 조항 신설도 검토

할 필요가 있다. 이는 변호사의 새로운 업무영역 확대와 전문성 강화에 기여할 것이다.⁶⁸⁾

2. 변호사법 개정 방안

2.1 제26조(비밀유지의무 등) 개정안

현행 변호사법 제26조는 지나치게 간략하여 현대적 법률실무의 복잡성을 반영하지 못한다. 다음과 같은 개정안을 제시한다.

[현행 규정]

“제26조(비밀유지의무 등) 변호사 또는 변호사이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안]

“제26조(비밀유지의무 등) ① 변호사 또는 변호사이었던 자는 직무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의뢰인에 관한 모든 정보를 보호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정보는 의뢰인이 변호사에게 제공한 정보, 변호사가 의뢰인을 위해 의뢰인, 증인 및 참고인으로부터 수집한 사건 관련 정보,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사건 관련 모든 의사소통 내용을 포함한다.

③ 변호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한하여 제1항의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1. 의뢰인이 충분한 설명을 들은 후 서면으로 동의한 경우

62) IBA Guidelines(2024), Orange List, Section 3.1-3.4.

63) Guidelines for Mediators in New Zealand(2011), Clause 3.2-3.4. 뉴질랜드의 2011년 Guidelines for Mediators는 권력불균형 문제를 정면으로 다룬다. 제3조는 “권력불균형, 안전, 통제 또는 내밀한 이슈로 인해 조정이 부적절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당사자 안전을 위한 조정인의 적극적 개입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64) European Code of Conduct for Mediators(2004), Article 1.1.

65) 유병욱(2019), “국제상사조정제도의 활용에 관한 연구” 『무역상무연구』 제84권, 161면.

66) California Business and Professions Code, Section 6077-6078.

67) 김용섭(2023), 앞의 글, 34~35면.

68) 김용섭(2021), 앞의 글, 48~49면.

2. 변호사가 자신에 대한 형사상 혐의나 민사상 청구를 방어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 내
 3.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급박하고 중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4. 법원의 명령이나 다른 법률에서 명시적으로 요구하는 경우
- ④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법무조합, 법률사무소에 소속된 변호사가 취득한 정보는 해당 조직의 모든 구성원이 동일한 비밀유지의무를 부담한다.
- ⑤ 제4항의 조직은 비밀정보의 보호를 위한 적절한 관리체계를 구축하여야 하며, 이익충돌 확인 등을 위한 내부 정보 공유는 필요최소한의 범위로 제한하여야 한다.”

2.2 제31조(수임제한) 개정안

현행 제31조는 쌍방대리, 공무원·조정위원 또는 중재인으로서 취급한 사건만을 수임제한 사건으로 규율하여 현대적 이익충돌 상황과 그에 대한 예외 사항을 포괄하지 못한다. 포괄적인 이익충돌 규정으로 전면 개정이 필요하다. (기존의 제2항 내지 제5항은 제4항 내지 제7항으로 재배치, 변호사 윤리장전 제22조에도 유사한 내용이 존재한다)

[개정안]

“제31조(수임제한) ① 변호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직무를 수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의뢰인의 이익과 변호사 자신 또는 제3자의 이익이 충돌하는 경우
2. 현재 의뢰인들 간에 이익이 직접적으로 대립하는 경우
3. 전 의뢰인의 이익과 현재 의뢰인의 이익이 실질적으로 관련되어 충돌하는 경우
4. 변호사가 판사, 검사, 공무원, 중재인, 조정

인, 기타 공적 직무를 수행하면서 실질적으로 관여한 사건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법률에 의해 금지되지 않을 것
2. 이해관계인들이 이익충돌 관계를 충분히 이해한 후 서면으로 동의할 것
3. 각 의뢰인에 대한 충실한 대리가 가능할 것

③ 법무법인등에 소속된 변호사에게 제1항의 사유가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그 법무법인등의 다른 구성원도 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 다만, 제31조의2에 따른 차단조치가 효과적으로 시행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3 제31조 제6항, 제31조의2(정보차단조치) 신설

현행법에는 정보차단벽에 대한 규정이 없고,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윤리장전 제48조에만 정보차단조치에 대해 규정을 두고 있다. 하지만 변호사윤리장전 제48조의 내용은 “사건처리에 영향을 주지 아니할 것이라고 볼 수 있는 합리적 사유가 있는 때”라고만 추상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캘리포니아는 증거규칙 제3-310조와 함께 State Bar의 윤리의건을 통해 정보차단조치를 인정하고 있으며, 뉴욕은 Rules of Professional Conduct Rule 1.11에서 이를 명문화하고 있다. 특히 정부 변호사가 민간으로 이직하는 경우 screening을 통해 수임이 가능하도록 규정한다.

한국도 법무법인의 대형화와 변호사 이동 증가를 고려할 때, 변호사법에 정보차단조치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① 정보차단조치의 요건과 효력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법적 안정성 확보하고, ② 위반 시 법적 제재 가능하도록 하여 실효성을 강화하고, ③ 주요선진국 수준의 이해충돌 관리 체계 구축하여 국제적 정합성을 갖출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변호사법 제31조에 제6항을 신설하여 정보차단조치를 통한 수임제한 예외를 인정하고, 제31조의2를 신설하여 그 구체적 요건과 절차를 규정해야 한다. 이는 현행 윤리장전 제48조에서 말하는 ‘합리적인 사유’를 구체화하여 법률 차원으로 격상시키는 것으로, 법무법인의 경쟁력 강화와 의뢰인 보호의 균형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신설안(제6항, 기존 제2항-제5항을 제4항-제7항으로 재배치하는 경우 제8항으로 신설)]

⑥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법무조합 및 제2항에 따른 법률사무소는 제31조의2에 따른 정보차단조치를 시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건을 수임할 수 있다.

1. 이해충돌 관계에 있는 변호사가 다른 법무법인등으로부터 이직한 경우로서, 해당 변호사가 전 소속기관에서 취급한 사건과 이해충돌이 있는 사건
2. 법무법인등 내에서 한 변호사가 상담한 사건의 상대방이 위임하는 사건으로서, 상담 내용이 단순 법률 질의에 그치고 실질적 비밀정보가 공유되지 않은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이해충돌 사건

[신설안]

“제31조의2(정보차단조치) ① 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법무조합 및 제31조제2항(위 2.2에 따라 재배치하는 경우 제4항)에 따른 법률사무소(이하 이 조에서 “법무법인등”이라 한다)가 제31조 제6항에 따라 정보차단조치를 시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이해충돌이 확인된 즉시, 차단 대상 변호사가 관련 비밀정보를 다른 구성원과 공유하기 전에 차단조치를 시행할 것

2. 차단 대상 변호사를 해당 사건의 모든 업무에서 완전히 배제하고, 사건 관련 서류 및 전자정보에 대한 접근을 차단할 것
3. 차단 대상 변호사와 해당 사건 담당 변호사 간에 물리적 격리조치를 취할 것
4. 차단 대상 변호사가 해당 사건으로부터 직접적 또는 간접적 경제적 이익을 받지 못하도록 할 것
5. 모든 구성원에게 차단조치 사실을 고지하고 준수 서약을 받을 것

② 법무법인등은 제1항의 정보차단조치를 시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절차를 따라야 한다.

1. 영향을 받는 전 의뢰인과 현 의뢰인 모두에게 차단조치의 내용과 절차를 구체적으로 기재한 서면을 지체 없이 통지할 것
2. 차단조치 시행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대한변호사협회에 차단조치 시행 사실을 신고할 것
3. 차단조치의 준수 여부를 매월 점검하고 그 기록을 5년간 보관할 것
4. 대한변호사협회의 점검 요구가 있는 경우 관련 기록을 제출할 것

③ 정보차단조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효력을 잃는다.

1. 차단 대상 변호사가 관련 비밀정보를 이미 다른 구성원과 공유한 경우
2. 차단 대상 변호사가 전 소속에서 해당 사건에 실질적으로 관여한 경우
3. 법무법인등의 규모나 구조상 효과적인 차단조치가 불가능한 경우
4. 의뢰인이 차단조치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④ 법무법인등은 정보차단조치의 시행을 위한 다음 각 호의 내부 규정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이해충돌 확인 절차
2. 차단조치 시행 절차 및 방법
3. 차단조치 위반 시 징계 기준
4. 정기적 교육 및 감독 체계

⑤ 대한변호사협회는 정보차단조치의 구체적인

시행 방법, 점검 기준, 서식 등에 관한 세부 지침을 제정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법무법인등 및 소속 변호사는 변호사법에 따른 징계 대상이 되며, 해당 사건의 수임은 제31조 위반으로 본다.

⑦ 정보차단조치의 세부 요건, 적용 범위, 예외 사항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변호사윤리장전 개정 방안

3.1 제6장 국제분쟁해결 윤리 신설

현행 변호사윤리장전은 국제조정이나 국제중재의 특수성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SIMC사건을 계기로 이에 대한 특별 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

[신설안]

“제6장 국제분쟁해결 윤리

제55조(국제조정인·중재인의 의무) ① 변호사가 국제조정인 또는 국제중재인으로 활동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1. 모든 당사자에 대한 독립성과 공정성을 유지할 의무
2. 절차 과정에서 취득한 모든 정보에 대한 절대적 비밀유지의무
3. 자신의 독립성이나 공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사정을 지체 없이 공개할 의무
4. 문화적 차이를 이해하고 존중하며 절차를 진행할 의무

② 국제조정인으로 활동하는 변호사는 당사자들의 자발적 합의를 촉진하는 역할에 충실하여야 하며, 자신의 견해를 강요하거나 특정 해결 방안을 유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국제조정인 또는 국제중재인으로 활동한 변호사와 그가 소속된 법무법인등은 해당 절차 종

료 후 2년간 어느 당사자도 대리할 수 없다. 다만, 모든 당사자가 충분한 설명을 들은 후 서면으로 동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6조(국제분쟁해결에서의 정보관리) ① 변호사가 국제조정이나 국제중재에 관여하는 경우, 이익충돌 확인을 위한 정보 공유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야 한다:

1. 정보를 공유하기 전에 아래 2호의 최소한의 인원의 정보를 당사자에게 제공하여 정보 공유에 대한 동의를 구할 것
2. 당사자의 이름과 사건의 일반적 성격만을 이익충돌 확인을 위해 필요, 최소한의 인원에게 공유
3. 민감한 정보는 이익충돌 확인 업무 담당자만 접근 가능하도록 제한
4. 확인 절차 완료 후 관련 정보의 즉시 폐기 또는 격리 보관

② 국제조정 절차에서 개별 협의(caucus)을 통해 취득한 정보는 해당 당사자의 명시적 동의 없이는 상대방이나 제3자에게 공개할 수 없다.”

3.2 정보관리 시스템 의무화

대형로펌의 체계적 정보관리를 위한 구체적 의무를 신설한다.

[신설안]

“제52조의2(법무법인등의 정보관리체계) ① 변호사 30인 이상의 법무법인등은 다음 각 호의 정보관리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1. 전자적 이익충돌 확인 시스템
2. 단계별 정보 접근 권한 관리 시스템
3. 비밀정보 유출 방지를 위한 물리적·기술적 보안 조치
4. 정기적인 정보보안 교육 프로그램

② 모든 법무법인등은 이익충돌 확인을 위한 정보

공유 시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필요최소한의 정보만 공유(need-to-know basis)
2. 정보 접근자의 사전 비밀유지 서약
3. 확인 완료 후 정보의 즉시 삭제 또는 격리
4. 모든 정보 접근 기록의 보존

③ 대한변호사협회는 법무법인등의 규모별로 적절한 정보관리체계 모델을 개발하여 보급하여야 한다.”

이는 SIMC사건에서 나타난 무분별한 정보 공유를 방지하기 위한 구체적 대안이다.

4. 징계 제도의 개선 방안

4.1 징계 절차의 신속화와 투명화

한국 변호사 징계 제도의 가장 큰 문제는 절차의 지연과 불투명성이다.⁶⁹⁾ 이를 개선하기 위

해 다음과 같은 제도 개선을 제안한다. 변호사 징계규칙을 개정하여 징계 처리 기한을 명시한다. 진정 접수 후 30일 내 사전조사 완료, 90일 내 징계개시 여부 결정, 180일 내 징계위원회 의결이라는 단계별 기한을 설정한다. 또한 진정인에게 절차 진행 상황을 통지하고, 피진정인의 답변서 요지를 제공하며, 징계위원회 출석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절차 참여권을 보장한다. 온라인 징계 정보 시스템을 구축하여 진정인이 사건 진행 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이는 캘리포니아 주 변호사협회의 온라인 시스템을 벤치마킹한 것이다.

4.2 구체적 징계 기준의 수립

현행 징계 기준의 불명확성을 해소하기 위해 “변호사징계 양정기준”을 공개하고 구체화한다. 다음은 비밀유지의무 위반에 대한 구체적 기준 예시이다.

[비밀유지의무 위반 징계 기준표]

위반 유형	기본 징계	가중 사유	감경 사유
과실에 의한 단순 유출	견책~과태료 500만원	다수 피해자, 반복 위반	즉시 시정, 피해 최소화 노력
중과실에 의한 대규모 유출	과태료 1000만원~ 3개월 정직	은폐 시도, 경제적 이익	자진 신고, 손해 배상
고의적 비밀 누설	6개월~1년 정직	대가 수수, 중대한 피해	정당한 목적, 공익 고려
조직적, 체계적 유출	1년 정직~제명	범죄 연루, 지속적 위반	(해당 없음)

SIMC사건과 같은 복합 위반(비밀유지의무 + 당사자 접촉 + 명예훼손)의 경우, 각 위반에 대한 징계를 합산하되 가중치를 적용한다. 예를 들어, 주된 위반 100% + 부수 위반 각 50%의 방식으로 산정한다.

4.3 국제 사건 관할 강화

국제조정이나 중재에서 발생한 윤리 위반에 대한 관할권을 명확히 한다. 변호사법 제97조(징계의 종류와 효력)를 개정하여 “한국 변호사가 국내외에서 변호사로서 수행한 모든 직무 활동”을 징계 대상으로 명시한다. 또한 국제기구

69) 손창완, 앞의 글, 316~320면.

와의 협력 체계를 구축한다. 대한변호사협회가 싱가포르 국제조정센터(SIMC), 국제상업회의소(ICC), 런던국제중재재판소(LCIA) 등 주요 국제분쟁해결기관과 MOU를 체결하여 윤리 위반 정보를 공유하고 공동 대응한다.

5. 예방적 제도의 구축

5.1 의무 교육 제도 강화

현행 연수 제도를 개편하여 윤리 교육을 강화한다. 모든 변호사는 연간 2시간 이상의 법조 윤리 의무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현재 2년마다 2시간), 국제업무 종사 변호사는 추가 2시간의 국제윤리 교육을 받아야 한다. 대형로펌(변호사 100인 이상) 소속 변호사는 정보보안 및 이익충돌 관리에 관한 특별 교육 2시간을 추가로 이수한다. 교육 내용은 이론적 지식뿐만 아니라 SIMC사건과 같은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한 문제 해결 워크숍을 포함한다. 특히 정보차단벽 구축과 운영, 이익충돌 확인 절차, 국제조정에서의 비밀유지 등 실무적 내용을 중점적으로 다룬다.

5.2 Best Practice 공유 플랫폼

대한변호사협회가 운영하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윤리적 best practice를 공유한다. 각 로펌이 개발한 이익충돌 관리 정책, 정보보안 프로토콜, 윤리 교육 자료 등을, 영업비밀을 제외하고, 공유하여 전체적인 수준 향상을 도모한다. 특히 국제업무 수행시 발생하는 윤리적 이슈와 해결 방안을 사례집으로 발간하여 배포한다. SIMC사건을 반면교사로 삼아, 유사한 상황에서 의 올바른 대처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6. 기대 효과와 한계

이러한 개선방안이 실현될 경우 다음과 같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첫째, SIMC사건과 같은 대규모 윤리 위반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구체적인 기준과 시스템적 통제는 개인의 일탈을 사전에 차단한다. 둘째, 한국 변호사와 로펌의 국제적 신뢰도가 향상된다.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윤리 체계는 국제업무 수주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 셋째, 의뢰인의 권익 보호가 강화된다. 체계적인 비밀보호와 이익충돌 관리는 의뢰인의 신뢰를 높인다. 넷째, 변호사 직업의 전문성과 윤리성이 제고된다. 명확한 기준과 공정한 집행은 변호사 직업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회복한다.

물론 이러한 개선방안에도 한계는 있다. 첫째, 제도 개선만으로는 윤리 의식 자체를 변화시키기 어렵다. 지속적인 교육과 문화 개선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 둘째, 글로벌 스탠더드와 한국적 특수성 사이의 긴장관계는 여전히 존재한다. 지속적인 조정과 보완이 필요하다. 셋째, 중소 로펌의 비용 부담 문제가 있다. 정부 지원과 단계적 시행으로 부담을 최소화해야 한다. 넷째, 기존 관행과의 충돌이 예상된다. 충분한 준비 기간과 인센티브 제공으로 연착륙을 유도해야 한다.

7. 소결

SIMC사건은 한국 변호사 윤리 체계의 총체적 개혁 필요성을 일깨워준 계기였다. 본 장에서 제시한 개선방안들은 단순한 땀질식 처방이 아닌, 구조적이고 체계적인 개혁 방안이다. 법령 개정, 윤리장전 보완, 징계 제도 개선, 예방 시스템 구축이라는 다층적 접근을 통해 실질적 변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중요한 것은 실행의 지이다. 아무리 좋은 제도도 실행되지 않으면 무의미하다. 법조계 전체가 윤리를 핵심 가치로

인식하고, 지속적인 개선 노력을 기울일 때 비로소 한국 법조계가 국제적 신뢰를 회복하고 진정한 전문가 집단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다.

제6장 결론

1. 연구의 요약

본 연구는 2022년 싱가포르 국제조정센터(SIMC)에서 발생한 변호사 윤리 위반 사건을 계기로, 변호사 윤리 규정의 구조적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SIMC사건은 단순한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급속히 국제화되는 법률시장에서 변호사 윤리 체계가 직면한 근본적 한계를 상징적으로 보여준 사례였다.

연구를 통해 밝혀진 변호사 윤리 규정의 주요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변호사법 제26조의 비밀유지의무 규정이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예외 사유가 불명확하여, 대형로펌 환경에서의 정보 관리에 대한 구체적 지침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이라는 포괄적 표현은 보호 대상의 범위를 불명확하게 만들며, 특히 로펌 내부에서의 정보 공유 한계에 대한 기준이 없다.

둘째, 변호사법 제31조의 이익충돌 규정이 현대적 법률실무의 복잡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국제조정인의 지위와 의무에 대한 규범적 공백이 존재한다. 특히 변호사윤리장전 제48조가 수임시 정보차단벽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건처리에 영향을 주지 아니할 것이라고 볼 수 있는 합리적 사유가 있는 때”라는 추상적 기준만 제시하여 실무적 적용이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셋째, 국제업무의 특수성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한국은 이미 국제중재를 처리하는 주요 허브로 성장했으나, 변호사 윤리 규정은 여전히 국내 소송 중심의 전통적 구조에 머물러

있다. 국제중재·조정인의 독립성, 중립성, 개별 면담 과정에서의 비밀유지 등 특수한 윤리적 요구사항이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본 연구는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변호사 윤리 규정과의 비교법적 검토를 수행하였다. 캘리포니아의 Rules of Professional Conduct는 한국과 비교하여 다음과 같은 비교우위를 보였다. Rule 1.6은 비밀 정보 보호의 대상과 예외를 명확히 규정하고, “need-to-know basis” 원칙을 통해 로펌 내부 정보 공유를 엄격히 제한한다. Rule 1.10은 정보차단벽(ethical screen)의 구체적 요건으로 적시성, 물리적·전자적 차단, 재정적 차단, 서면 통지를 명시한다. Rule 4.2는 대리인 있는 당사자와의 접촉을 명확히 금지하며, 조정 절차에서는 더욱 엄격하게 적용된다.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네 가지 차원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변호사법 차원에서 제26조를 전면 개정하여 비밀정보의 범위와 예외 사유를 명확히 하고, 제31조를 개정하여 포괄적 이익충돌 규정을 도입하며, 제31조의2를 신설하여 정보차단조치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둘째, 변호사윤리장전에 국제분쟁해결 윤리를 별도 장으로 신설하고, 대형로펌의 정보관리체계를 의무화한다. 셋째, 징계 절차를 180일 내 처리하도록 기한을 명시하고, 구체적 징계 기준을 공개하며,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투명성을 확보한다. 넷째, 의무 교육 강화, best practice 공유 플랫폼 구축 등 예방적 제도를 마련한다.

2. 한계와 향후 연구과제

본 연구는 싱가포르 국제조정센터의 단일 사례를 중심으로 분석했다는 한계가 있다. 향후 더 많은 국제중재·조정 관련 윤리 위반 사례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일반화 가능성을 높일 필요

가 있다. 또한 본 연구는 주로 한국과 미국의 비교에 초점을 맞추었으나, 싱가포르, 홍콩, 일본 등 아시아 주요 국가들과의 비교 연구도 필요하다. 특히 아시아 지역 내 변호사 윤리 기준의 조화(harmonization) 가능성에 대한 연구는 중요한 과제다. 나아가 인공지능, 블록체인 등 신기술이 변호사 윤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도 시급하다. 특히 AI를 활용한 이익충돌 검색 시스템, 블록체인 기반 정보보안 체계 등은 향후 중요한 연구 주제가 될 것이다.

3. 맺음말

SIMC사건은 한국 법조계에 던져진 무거운 경고였다. 천 명이 넘는 로펌 임직원들에게 무분별하게 공유된 의뢰인의 비밀, 조정 진행 중 일방 당사자에게 직접 접촉한 파트너 변호사, 확인되지 않은 정보 확산으로 인한 명예훼손, 그리고 이 모든 것에 대해 침묵한 기관들. 이는 단순한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시스템의 총체적 실패였다. 그러나 위기는 곧 기회이기도 하다. SIMC사건은 한국 변호사 윤리 체계의 근본적 개혁 필요성을 일깨워주었고, 국제적 수준으로 도약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했다. 본 연구가 제시한 개선방안들이 단순한 제안에 그치지 않고 실제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기를 희망한다.

법률시장의 국제화는 불가역적 추세이며, 한국 변호사들의 국제무대 진출은 계속 증가할 것이다. 2019년 싱가포르 조정협약 가입, 2024년 대한상사중재원의 국제조정규칙 시행, 2025년 9월 법무부의 싱가포르 조정협약 이행법률안의 제정 등은 이러한 추세를 가속화하고 있다. 이제 한국의 변호사 윤리 체계도 이러한 변화에 발맞춰 진화해야 한다. 변호사 윤리는 단순한 행위 규범이 아니다. 그것은 법치주의의 수호자로서 변호사가 지켜야 할 최소한의 약속이며, 의뢰인과 사회에 대한 책임의 표현이다. 특히

국경을 넘나드는 국제업무에서 윤리의 중요성은 더욱 커진다. 한 나라의 변호사가 보여주는 윤리적 수준은 곧 그 나라 법체계 전체의 신뢰도를 좌우하기 때문이다.

본 연구가 제안한 법령 개정, 윤리장전 보완, 징계 제도 개선, 예방 시스템 구축은 모두 하나의 목표를 향한다. 그것은 한국 변호사들이 국내에서든 국제무대에서든 전문성과 윤리성을 겸비한 진정한 법률전문가로 인정받는 것이다. 이는 개별 변호사나 로펌의 명성을 넘어, 한국 법조계 전체의 미래가 걸린 문제이다. 변화는 이미 시작되었다. 해가 갈수록 증가하는 징계 건수는 역설적으로 윤리 의식의 제고를 보여주는 신호일 수 있다. 대형로펌들의 자발적인 시스템 개선 노력, 젊은 변호사들의 높아진 윤리 의식, 시민사회의 지속적인 감시는 모두 긍정적인 변화의 징조이다. 그러나 진정한 변화를 위해서는 법조계 전체의 집단적 노력이 필요하다. 대한변호사협회의 리더십, 법무부와 국회의 입법 의지, 개별 변호사들의 실천 의지가 하나로 모일 때 비로소 한국 변호사 윤리 체계의 혁신이 가능할 것이다.

SIMC사건의 교훈을 잊지 말아야 한다. 그것은 우리에게 현재 위치를 정확히 보여주는 거울이자,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나침반이다. 이제 한국 법조계가 윤리적 성찰을 바탕으로 새로운 도약을 시작할 때이다.

< 참고문헌 >

1. 국내문헌

- 공영호(2017), “A Comparative Study of the Attorney Ethics Rules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in International Arbitration Cases” 『한양대학교 법학논총』 제34권 제3호.
- 김보람/이재호(2024), “변호사 업무에서의 인공지능(AI)의 사용과 변호사 윤리” 법학논총』 제41권 제1호.
- 김용섭(2021), “변호사법 제109조와 민간조정 활성화를 위한 입법과제” 『인권과정의』 제502호.
- 김용섭(2023), “조정제도의 혁신을 위한 법정 책적 과제” 행정법학』 제24호.
- 김용훈 외(2020), “변호사의 이익충돌회피의무” 『법조』 제69권 제4호.
- 김준기(2023), “Recent Debates in Attorney-Client related Privilege and Confidentiality in Korea.” 중재연구』 제33권 제3호.
- 김제완(2011), “이익충돌방지를 위한 로펌의 자율통제절차에 관한 연구” 인권과정의』 제414호.
- 김현수(2024), “변호사의 이익충돌 회피의무에 관한 고찰 - 변호사법 제31조 제1항 제1호 수임제한의 요건과 효과를 중심으로” 『대한변호사협회 법조논단』.
- 배기석(2010), “「변호사비밀유지의무」의 완화 경향에 관한 연구” 『법학연구』 제51권 제4호 (통권 제66호).
- 서주연/윤종행/친하람(2020), “변호사와 의뢰인 간 비밀유지권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20-AB-09」.

- 손창완(2019), “미국의 변호사 징계제도의 변호사 징계사유 및 징계기준에 관한 연구” 『법조』 제68권 제6호.
- 유병욱(2019), “국제상사조정제도의 활용에 관한 연구” 『무역상무연구』 제84권.
- 이태영(2017), “변호사의 비밀유지의무” 『인권과정의』 제469호.
- 하정철(2016), “견해상 이익충돌” 『민주법학』 제62호.

2. 외국문헌

- Baker McKenzie(2024), International Arbitration Yearbook 2024-2025: South Korea. Baker McKenzie Publishing.
- California Lawyers Association Ethics Committee(2021), Formal Opinion No. 2021-1: Elements of Effective Ethical Screens.
- California State Bar(2024), Annual Discipline Report, FY 2024.
- California State Bar(2018), Rules of Professional Conduct (effective November 1, 2018).
- IBA(2024), IBA Guidelines on Conflicts of Interest in International Arbitration (Revised Edition).
- Joongi Kim(2017), International Arbitration in Korea. Oxford University Press.
- Lee & Ko(2024), “Recent Developments Regarding Attorney-Client Privilege in Korea.” Chambers and Partners. <https://chambers.com/articles/recent-developments-regarding-attorney-client-privilege-in-korea-2> (최종방문: 2025. 9. 30.)

- Mitton v. State Bar, 71 Cal. 2d 525(1969).
- Schonewille, M.(2024), Toolkit Mediation: For mediators and negotiators. Toolkit Company.
- Susan Saab Fortney (2004), Legal Malpractice Insurance: Surviving the Perfect Storm, 28 J. Legal Prof. 41.
- UNCITRAL(2006), Model Law on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with amendments as adopted in 2006).
- UNCITRAL(2024), Code of Conduct for Arbitrators in International Investment Dispute Resolution.

주제어 : 변호사 윤리, 국제조정, 이익충돌, 비밀유지의무, 정보차단벽, 대형로펌, 싱가포르 국제조정센터

Keywords : Attorney Ethics, International Mediation, Conflict of Interest, Duty of Confidentiality, Information Barrier, Large Law Firms, Singapore International Mediation Centre (SIMC)